

速記界

第 41 號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 권두언 - 마음속의 대나무처럼
- 신년사 -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라
- 논단 - 어투가 살아야 문체가 산다
- 인터스테노
 - 대화의 일반적인 형태
 - 인터스테노의 규약
 - 인터스테노의 규약(영문)
- 세미나지상중계 - 제12회 속기학술세미나
- 지방의회 소개 - 경기도의회
- 문화코너 - 동남아시아 언어 외래어 표기법 제정 고시
- 단상 - 회의상황의 유의미한 다큐멘테이션을 위해서
- 국정조사 수행기 - 이라크현지 진상조사 수행을 다녀와서
- 회원동산 - 속기는 영원한 내 친구
- 새내기속기사
 - 이제부터 시작이다!!
 - 나는 ‘아직’ 부족한 나무
- 협회동정
- 회원동정
- 편집 후기

마음속의 대나무처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라던 IMF 때보다 어렵다고들 말하던 힘든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도 모두들 잔뜩 움츠려 의욕을 잃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희망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새해를 이렇게 맞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소동파(蘇東坡)가 쓴 글 중에 ‘마음속의 대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를 그릴 때는 먼저 마음속에 대나무를 완성하고 나서 붓을 들고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비관과 부정이 아니라 낙관과 긍정으로 마음속에 새해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긍정의 마음 밑에서 희망의 죽순을 움트게 하고 그것이 쪽쪽 뻗어나갈 것을 낙관하며 실천한다면 짧고 연약하고 초라한 죽순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장대하게 자라 있는 대나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올해로 제가 여러분과 대한속기협회에서 인연을 맺은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記錄文化의 旗手인 속기인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되는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과거사 진상규명’이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떠올랐을 때,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생존한 사람들이 많아 비교적 쉬운 연구 분야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기억 속의 역사를 규명해 줄 당시의 기록이 보존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가장 연구가 힘든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500년 전 우리 왕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록은 있어도 역대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미국,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가 초대 의회부터 속기록을 작성·발간·보존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은 속기인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요즘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으로부터 과거의 교훈을 도출해 내는 것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기사라는 직업은 전문직종이면서도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회원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열매를 안겨 드리지 못한 것 같아 회장으로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마음 밭에 하늘에 닿을 듯한 기상을 가진 장대한 대나무를 그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희망과 다짐을 북돋워 줍니다. 길은 길 위에 있는 사람의 것이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크게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보람과 재미를 느끼며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라

친애하는 대한속기협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乙酉年 한 해 모든 가정에 힘찬 새벽닭의 울음처럼 건강과 행복이 가득 울려 퍼지길 기원합니다.

신임 이사장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린 지가 그야말로 엇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의 각오를 갖고 집행부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후배들에게 어려운 짐들을 그대로 남겨 주고 물러나게 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올해는 대한속기협회가 대한속기학술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생에서 50이면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지천명이라 하였습니다. 그간 각자의 자리에서 소신껏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현재 우리 속기인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속기인도 이 물음에 속 시원히 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기사의 위상과 역할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그 종착점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우리 속기인들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온몸으로 부딪혀 싸워야 할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孫子は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급 전술가라 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상적인 전략으로 知彼知己를 꼽았습니다.

知己. 저를 비롯한 우리 속기인들은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있어야 할 자리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을 갖고 있을 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 듯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知彼. 어쩌면 우리를 둘러싼 외부환경들은 우리가 어찌 해 볼 수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외부로부터 밀어닥치는 거대한 파도 속에 그냥 내던져지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百戰不殆. 그러면 지피지기 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회원 간의 신뢰와 협력입니다. 전국의 속기인들이 서로 도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때 무거운 각자의 짐들은 나누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끊임없는 대안 제시입니다. 집행부는 협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회원들에게 제시하고, 또 회원들 스스로도 진취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계속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의 위상과 입지를 유지 내지는 강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집행부는 귀를 활짝 열어 놓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것이며 입을 크게 벌려 여러분의 뜻을 대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몇 년 전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한창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그 꿈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꿈조차 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꿈도 없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새해 아침, 농부가 정성스레 씨를 뿌리듯 여러분 마음의 밭에도 꿈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올 가을에는 우리 모두 풍성한 수확을 한 아름씩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마음속 깊이 빌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투가 살아야 문체가 산다

홍 기 표(국회사무처 속기1과)

1. 어투와 문체의 관계

로마인이여, 동포들이여,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의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듣기 위해서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내 명예를 걸고 나를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믿기 위해서 내 명예를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지혜로써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더 판단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분별심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만약 여기 모인 사람 가운데 시저의 친구가 있다면 그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저에 대한 브루투스의 우정은 그분에게 조금도 뒤지는 바 없었다고. 그리고 만약 그분이 왜 브루투스가 시저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느냐고 힐문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시저를 덜 사랑한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은 시저 혼자 살고 여러분 모두가 노예로 죽기를 원하십니까, 시저 한 사람이 죽고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서 사는 것을 더 원하십니까?

시저는 나를 사랑했고,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눈물을 금할 수 없습니다.

② 그가 운이 좋을 때 나는 즐거웠고, 그가 용감했을 때 나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심을 품었을 때 나는 살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랑에는 눈물을, 그의 행운에는 즐거움을, 그의 용기에는 경이를, 그러나 그의 야심에는 죽음으로 대한 것입니다.

③ 여기 누군가 노예를 원할 만큼 비굴한 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누군가 로마인이 아니기를 원하는 야만적인 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누군가 조국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비열한 자가 있습

니까?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 대답을 들어 봅시다. 잠시 멈추고 대답을 기다리겠소.

[시민들: 없소. 브루투스,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아무에게도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시다.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 3막 2장에 나오는 브루투스(Marcus Brutus)의 연설문이다. 줄리어스 시저를 살해한 브루투스가 동요하는 시민을 무마하기 위해 군중 앞에서 시저 살해의 정당성을 웅변적으로 설파하는 대목인데, 읽어 볼수록 연설이라기보다는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호흡과 운율, 그리고 그 수사법에 있어서.

그런데 위 연설문 중 ①, ②, ③의 밑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보자. ①만약 여기 모인 사람 가운데 시저의 친구가 있다면 시저에 대한 브루투스의 우정은 그분에게 조금도 뒤지는 바 없었다고 그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왜 브루투스가 시저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느냐고 힐문한다면 나는 그것은 내가 시저를 덜 사랑한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②그가 운이 좋을 때 나는 즐거웠고, 그가 용감했을 때 나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가 야심을 품었을 때 나는 살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③여기 누군가 노예를 원할 만큼 비굴한 자가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여기 누군가 로마인이 아니기를 원하는 야만적인 자가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여기 누군가 조국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비열한 자가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분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도치된 문장을 모두 정상의 문장으로 바꾸고, 복문은 단문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반복되는 문장은 모두 지우고 하나만 살려 놓았다. 내용상으로 빠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느낌은 전혀 다르다. 본래의 시적인 맛은 거의 사라져 버리고 밋밋하고 장황한 설명문이 되어 버린 것 같다. 따라서 연설로서의 호소력이나 설득력은 아주 약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문체가 문장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단지 문학 작품에서만 아니라 구두로 행해지는 현실의 구어체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실에서는 말하는 이에 따라 그 언어 형식이 천차만별로 나타

난다. 그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 형식을 우리는 어투라 한다. 사전적 설명을 빌리자면, 어투란 “말을 하는 버릇이나 본새”를 의미한다. 이러한 어투는 속기록의 문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용하는 어휘나 수사, 어법에 따라 발언자 특유의 독자성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어투에는 발언자의 개성이 강하게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 속기록은 당연히 그러한 개성까지도 전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어투를 살리는 방향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2. 덜 쓰는 것이 수문?

속기록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수문을 한다. 발언 내용을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수문의 원리 중에서 ‘문체를 챙겨 준다’는 것은 바로 어투를 그대로 살려 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속기록을 검토하다 보면 상당수의 속기사들이 수문에 대해 무언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번문을 하면서 몇 글자 줄여서 쓰는 것—그것이 수문의 전부인 줄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자꾸만 어휘나 어투에 손을 대는 이들이 있다. 그것도 거의 기계적으로 말이다. 한마디로 ‘되도록이면 몇 글자라도 덜 쓰자’는 주의인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라.

- ①이 문제에 대해(→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②시기적(→ 시기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 ③우리는 경제성장도 달성했고(→ 하였고) 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 ④러시아 경험차관 활용 문제는 철도 개선과는 연계시키기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않느냐) 생각됩니다.

‘몇 글자 덜 쓰기’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대해서’뿐 아니라 ‘교훈 삼아서’ ‘가결되어서’처럼 ‘~서’로 끝나는 어미는 ‘교훈 삼아’ ‘가결되어’로 무조건 이를 생략해 버리는 것이다. ‘~적인’이나 ‘~하였’도 마찬가지다. ‘건설적인 의견’ ‘근시안적인 처방’은 무조건 ‘건설적 의견’ ‘근시안적 처방’이 된다. 그리고 ‘~하였고’는 ‘~했고’로, ‘않느냐’는 ‘않냐’로 줄어든다. 그것뿐이 아니다. ‘절대로 반대입니다’는 ‘절대 반대입니다’로, ‘그럴 때에는’은 ‘그럴 때는’이 된다. 한 글자라도 덜 쓰기 위한 노력이 참으로 눈물겹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걸 또 약과다. 어투에까지 신경 쓸 게 뭐냐는 듯 전혀

다른 어투로 바꾸는 이들도 있다.

④과연 이것이 수도권에 있어야 하는 것이냐, 지방으로 갈 수 없는 것이냐를(→ 없는 것이냐, 그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⑤정치권력으로부터 무색투명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⑥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정략적 특검이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⑦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수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몇 글자씩 마구 빼 버려도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해도 내용 전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발언 속에 담긴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투의 변화에까지 신경 쓰며 속기록을 읽는 이들 또한 거의 전무할 것이다. 그러나 음성언어 본래의 뉘앙스는 아주 달라져 버리고 만다. 더 나아가서 음성언어의 어투에는 발언자의 출신과 인품, 교양, 지식수준과 성장 환경, 나아가서는 발언 순간의 감정까지도 그대로 배어 있기 마련이다. 어투를 속기사 임의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보를 변질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3. 오락가락하는 어투

제247회 국회 제4차 본회의록에서 박계동 의원의 어투를 정리해 보았다. 어투가 어떻게 바뀌는지 주의해서 살펴보기 바란다.

①17대 국회 개원부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소망하는 바람직한 국회, 그리고 생산적인 국회, 그리고 상생하는 국회가 되기를 국민들이 바랄 겁니다.

②세 차례에 걸쳐서 명함 250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배부했다는 겁니다.

③그래, 명함 250장이 큰 겁니다?

④불우소년소녀가장 모임에 참석해 가지고 직원 중의 1명이 10만 원 줬다는 것입니다.

⑤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것은 엄청난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⑥‘주요 지지 기반과 지역 활동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써 내게 되어 있어요.

⑦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⑧네 차레나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 이거예요.

⑨그런데 피의자 진술도 안 받아 보고 이 체포동의안이 여기 올라온 겁니다.

⑩체포?구속동의안 이것을 가결해 버린다면 저는 사실 제 양심적으로도 정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⑪면책특권은 그 책임이 영원히 면해지는 것이지만 불체포특권은 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투의 변화로 볼 때 박계동 의원의 질의는 최소한 네 사람의 속기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속기록에는 이처럼 동일인의 어투가 속기사의 선호에 따라 연속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정 어미를 생략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모든 어투를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어투로 바꾸어 주는 이도 있다. 심지어는 복문을 단문으로, 단문을 복문으로 바꾸어 버리기도 한다. 과연 속기록에서 동일인의 어투가 이렇게 계속 달라져도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속기록에서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 한글 맞춤법에서는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제 3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 그건 / 그것이 ↔ 그게 / 나를 ↔ 날 / 너는 ↔ 년 / 이것이 ↔ 이게

본딧말이나 준말이 맞춤법상 모두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준말은 시나 소설, 수필, 신문 칼럼 등에서 사회적으로 폭넓게 쓰이고 있다. 속기록이라고 굳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①천도란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전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②물론 수사를 지켜보는데 그에 대한 궁금증이 타당한 거예요, 아니면 터무니없는 거예요?

이상할 것도, 이해를 못 할 것도 없다. ‘거’는 국어사전에도 엄연히 의존 명사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다. 말하는 그대로 기록하자. ‘것’이라고 하면 ‘것’으로, ‘거’라고 하면 ‘거’로!

4. 준말은 준말대로, 본딤말은 본딤말대로

준말을 무조건 본딤말로 바꾸어 주는 경우는 ‘거/것’뿐만이 아니다. 발언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준말을 사용하는데 속기사의 교체에 따라 단속적으로 본딤말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①도대체 정부에서는 무엇을(→ 무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을(→ 이런 걸) 철저히 방비를 했다면 이런 신용불량자가 400만을 넘을 정도로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무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②정부가 FTA 통과에 대해서 과연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③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노래를 길거리에서 뭔지도 모르고 부르고 다닙니다.

동일인의 발언을 기록하면서 어떤 이는 준말을 본딤말로 고쳐 주었고, 어떤 이는 준말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또 있다.

④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면 외에 다른 것이 더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이해찬 국무총리)

⑤정보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얻기도 합니다마는, 또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니다마는’이라는 본딤말을 잘 쓰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습니다만’이다. 그런데 속기록에서는 거의 기계적으로 ‘마는’이다. 대부분의 속기사들이 ‘만’이라는 준말을 기피하는 까닭이다. ‘만’과 ‘마는’을 철저히 가려서 기록하는 이는 몇몇에 불과하다. ‘뭐’는 ‘무엇’의 준말이요, ‘만’은 ‘마는’의 준말이다. 준말을 굳이 본딤말로 살려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말한 대로만 기록하자.

5. 개인의 고유 어투에도

①대통령께서 선거에 올인한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②총리가 이 자리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선 발언 내용의 위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③우리 국방부가 주적 개념을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론 북쪽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지 않습니다.’ ‘~습니다마는, 그러나’ ‘~다고 한다면’-고건 전 국무총리의 고유 어투들이다. 이를 꼬박꼬박 ‘~하지 않습니다.’ ‘~습니다마는,’ ‘~다면’으로 바꾸어 주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 손에만 들어가면 국무총리의 어투가 어김없이 바뀌곤 했다. 물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쓰다고 한다면”이라고 하면 무언가 의미가 중첩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고유의 어투에까지 손을 대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④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8회 국회 제3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송영선 의원은 깍듯이 ‘님’자를 붙이면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세는 끝날 때까지 거의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속기록에서는 중반쯤에서 그 자세가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⑤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총리님’ 하다가 갑자기 한참 동안 ‘님’자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발언은 계속 ‘장관님’ ‘총리님’이었다. 속기사는 왜 ‘님’자를 빼 버린 것일까. 이것도 수문인가? 발언자의 교양이나 개성을 드러내는 이러한 언어 습관은 속기록에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한다.

6. 군더더기와 동어 반복

①저희 통합신당도 당사 임대 보증금을 소속 의원들이 2000만 원씩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냈습니다.

문장이 웬지 부자연스럽다. 동어 반복으로 목적어가 둘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문체가 아니라 문법을 챙겨 주어야 한다. 문맥상 중요성이 덜한 쪽을 제거하면 된다.

cf→ ①저희 통합신당도 당사 임대 보증금을 소속 의원들이 2000만 원씩 대출을 받아서 냈습니다.

이렇게 동어 반복일 때는 문법에 맞게 정리해 주어야 하지만, 문체하고 관련될 때는 경우가 다르다.

②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요, 예산 확보도 문제고요, 인력 충원도 문제예요.

‘요’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부사어나 목적어 등 어디에든 붙어서 사용되는 보조사다. 이 보조사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지만 없어도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속기록에서 ‘요’를 무조건 제거해 버리는 이들이 많다. 예문 ②는 ‘요’가 반복된 경우인데, 이건 반복이라기보다 완전 군더더기다. 왠지 모르게 지저분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내용상 필요 없는 ‘요’를 모두 제거해 보았다.

cf→ ②‘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예산 확보도 문제고, 인력 충원도 문제예요.

막상 고쳐 놓고 보니 어쩐가. 발언자의 어투가 너무 말끔해진 느낌이 들지 않는가. 전혀 딴 사람의 발언 같다. 이처럼 ‘요’는 내용상으로는 중요치 않더라도 어투로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또한 발언자 고유의 어투로 보아 살려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실 고민이다. ‘요’를 남발하는 대로 다 기록하자니 속기록이 지저분해지고, 정리해 주면 발언자의 개성이 사라지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다. 정리를 해 주더라도 어떤 경우에 어떠한 원칙에 의할 것인지. 그러나 어쨌든 ‘요’를 무조건 지워 버리지 않은 말자, 아래 예문처럼.

③그것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요,) 1988년도 당시 노태우 정권 때 처음에 3% 보험료를 부담하면 70%를 받게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어투와 상관없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요’를 종결어미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만 나오면 무조건 온점(.)을 쓴다.

④기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금지 그리고 남용 규제인데요. 특히 남용 규제와 관련해서 이 규제가 노동시장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⑤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요. 제가 이것은 사실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는 부분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내 흡연 문제입니다.

예문 ④에서 ‘규제인데요’는 ‘규제+인데+요’(명사+조사 ‘이다’의 연결어미+보조사 ‘요’)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인데’가 연결어미이므로 ‘요’역

시 연결어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온점은 맞지 않다. 문장부호의 사용은 어미의 쓰임새를 고려해야 한다.

cf→ ④'-(전략)- 불합리한 차별 금지 그리고 남용 규제인데요, 특히 남용 규제와 관련해서-(후략)-

예문 ⑤에서는 '요'가 남발된 경우인데, 온점까지 남용하여 마치 3개의 복문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 온점을 반점(,)으로 바꾸고, '요'를 하나쯤 정리해 주면 어투에는 크게 손상이 가지 않을 것 같다.

cf→ ⑤'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제가 이것은 사실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는 부분이 보여서-(후략)-

그러나 다음 예문은 연결어미이면서도 그 쓰임새가 또 다르다. 형태는 연결어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결어미로 쓰였다. 당연히 온점을 사용해야 한다.

⑥심지어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주부들도 있다는 소문도 많습니다. 실제로도 있고요. 그런 소문 들어 보셨습니까?

7. 동어 반복과 강조법

동어 반복이 무조건 군더더기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의도적인 동어 반복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 기계적으로 지워 버리다 보면 속기록상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①그래서 본 의원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비가 미덕이고 애국이라는 점을(→ 소비가 미덕이고, 소비가 애국이라는 점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가 미덕이고, 소비가 애국이라는 점을”—이건 ‘소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발언자는 의도적으로 동어 반복의 수사법을 사용한 것이다. 속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소비’를 한 번만 기록하였다. 동어 반복이 군더더기냐, 의도적인 것이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속기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미덕이다.

②북한의 변화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검증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f→ ②'북한의 변화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 그것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검증 방법, 그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문 ②는 속기록에 수문되어 나타난 문장이요, ②'는 발언 그대로를 살려 놓은 것이다. 발언자는 '그것'이란 대명사를 두 번 사용했다. 두 번 다 앞 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반복이다. 그 중요성을 힘주어 강조하려는 것이다. 몇 글자 덜 쓰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의도성을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③사실 우리들은 수십만 국민들을(→ 수십만, 수백만 국민들을) 대표하여 발언하고 있습니다.

제248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성곤 의원의 발언이다. “수십만, 수백만의 국민들”이라고 한 것을 “수십만 국민들”로 기록해 놓았다. 국회의원은 범조문상으로는 수만에서 수십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수백만 명의 인구를 가지는 선거구는 없다. 그러한 사실을 고려했음인지 ‘수백만’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평소에도 강조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속기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사실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된다. 정말은 정말대로,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무식한 소리는 무식한 대로 기록해야 한다. 그 발언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발언자의 몫이다.

그런데 여기서 발언자가 ‘수백만’이라는 어휘를 사용한 것은 무식의 소치가 아니다. 수사법상 많은 국민을 대표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강조법일 뿐이다. 발언자의 의도를 살려 말한 그대로 기록했어야 할 대목이다. 한데 이러한 잘못된 수문으로 초래되는 문제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날 5분 자유 발언에서 마지막으로 등단한 남경필 의원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발언하였다.

③존경하는 김성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하는 것은 수십만, 수백만 국민의 대표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속기록을 작성하면서 한 사람은 ‘수십만 국민’으로 수문(?)을 해주었고, 한 사람은 ‘수십만, 수백만 국민’을 그대로 살려 주었다. 그로 인해 남경필 의원은 남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보태어 말한 꼴이 되어 버렸다. 제발 말한 그대로 기록하자.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8. 구어체냐, 문어체냐

속기의 대상은 일차적으로는 음성언어이다. 음성언어의 특성상 속기록에는 당연히 구어체가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러한 구어체 문장을 영 내

키지 않아 하는 이들이 있다. 무조건 문어체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 속기록에는 또 구어체와 문어체가 오락가락하는 발언이 많다.

①지금은 전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거 예요.)

②수업에 지장이 없어도 계속 공사가 있고 시끄럽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애들보고 수업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라고요?)

③부시가 대통령 되자마자 그 사람을 CIA 국장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겠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전문성을 높이 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요.)

④감축과 재배치에 대해서 북한 자신의 방어계획 내지는 군사계획 내지는 남북계획에 어떤 변경을 가할 정도의 반응은 아니라고 평가하십니까?(→ 평가하시는지요?)

사랑방 대화식의 편하게 주고받은 말을 모조리 문어체화하게 되면 속기록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실제 그날의 회의 분위기와는 아주 판판이 된다. 발언자에 따라, 발언 상대에 따라, 또는 발언 내용에 따라 회의장의 분위기는 수시로 바뀐다. 그러한 분위기까지 속기록에 담기 위해서는 설사 품위가 좀 떨어지는 어투라 할지라도 말한 그대로 기록하자. 다음 예문처럼 심한 경우에도!

⑤왜 자꾸 딴 말이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말이 그리 길어? 기여, 아녀?

우리말 중에는 의미는 같은데 각각 구어체와 문어체에서만 쓰이는 단어들 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와(과)/하고/랑’과 ‘에게/한테’란 조사다. 회의장에서는 ‘하고/랑’과 ‘한테’ 같은 구어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속기사들 중에는 이를 아주 기피하는 이들이 있다. 꼬박꼬박 ‘하고’나 ‘랑’은 ‘와(과)’로, ‘한테’는 ‘에게’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하고’ ‘랑’ ‘한테’도 엄연히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다. 이 또한 기피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굳이 문어체 어휘로 바꾸어 속기록을 딱딱하게 만들지 말자.

⑥그 문제와 군사작전적인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cf→ 그 문제하고 군사작전적인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후략)

⑦우리가 미국과 협의해서 할 부분과 안 할 부분을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cf→ 우리가 미국이랑 협의해서 -(후략)-

⑧정부가 중심을 잡고 원칙을 세워야만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장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cf→ -(전략)-해결해 갈 수 있다고 장관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9. 번역투는 번역투대로

①결국은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추론하였었다는 얘기지요?

②남북한 직접적인 외교 채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③현 상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매우 좋은 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속기록을 작성하면서 아주 부자연스러운 어투를 대할 때가 많다. 그중의 하나가 번역투의 말이다. 예문 ①, ②, ③이 왜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의아해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영어나 일어를 직역한 어투가 그만큼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제는 이러한 어투들이 언중(言衆)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굳어져 버린 것 또한 현실이다.

‘-였었-’은 본래 우리말 문법에는 없는 영어식 시제다. 따라서 예문 ①에서는 ‘추론하였었다’보다 ‘추론하였다’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영어식 시제는 이미 우리말 속에 깊이 스며든 지 오래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어엿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이제는 우리말로 인정한다는 뜻일 게다.

‘보여줍니다(보+ 이+ 어+ 집니다)’에서 ‘-이-’는 피동의 접미사다. ‘판단되어집니다(판단+ 되+ 어+ 집니다)’에서 ‘-되-’는 모두 피동의 접미사 어간이다. 거기에 피동의 보조용언 ‘지다’가 만나면 문법 이전에 듣기에도 부자연스러워진다. ‘보입니다’ ‘판단됩니다’ 해야 우리말 문법에도 맞다. 그러나 이 또한 이미 세력을 형성하여 널리 쓰이고 있는 어투다. 철저히 문법적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그런데 심리적 거부반응은 다음 예문들이 훨씬 더하다.

④대부분의 국내 연구기관 그리고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다 우리 경제가 당초에 본 것보다는 좋아질 거다라고 봤습니다.

⑤대통령께서 장관의 임기는 최소한 3년 정도는 보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알고 계시지요?

⑥“외국의 우수인재를 보쌌해서라도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남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위 예문들의 밑줄 부분은 ‘좋아질 거라고’ ‘보장하겠다는’ “~ 않겠습니다.” 하고’로 바로잡아 주어야 우리말 문법에 맞다. 또 그렇게 해야 제대로 수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마음에 안 들더라도 꼭 참고 말한 대로 기록해 줄 것을 필자는 권하고 싶다. 물론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위와 같은 번역투의 말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속기록은 다르다. 이러한 어투는 우리말이 외래어의 영향을 받아 변질되어 가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문법 차원을 떠나서 이러한 학식(?) 있는 어투들은 그대로 속기록에 담아 놓도록 하자.

10. 도치된 문장에는 문장부호를

①법무부 장관님, 답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박또박 잘해 주셔서 요즘 인기가 점점 올라가십니다.

cf→ ①‘법무부 장관님, 요즘 인기가 점점 올라가십니다, 답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박또박 잘해 주셔서.

정서의 환기와 변화감을 끌어내기 위하여, 혹은 문장 성분의 강조를 위하여 정상적인 어순을 바꾸어 쓰는 것을 도치법이라 한다. 도치법은 문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자주 쓰인다. 그러나 음성언어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도 없이 미처 얘기하지 못한 것을 말이 끝난 뒤에 첨가하는 형태로 쓰일 때가 많다. 그렇다고 하여 어순을 무조건 정상으로 잡아 주는 데는 문제가 있다. 발언자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음성언어에는 그 나름의 뉘앙스가 있고 발언자의 심리나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문 ①은 속기록에 나타나 있는 문장이요, ①’는 원래의 음성언어 그대로를 살려 주고 문장부호만 챙겨 준 것이다. 비교해 보면 내용은 같지만 뉘앙스는 사뭇 다르다. 왜 이것을 꼬박꼬박 어순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것일까. 문장부호만 챙겨 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속기록에는 도치문이 대체로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그러니까 총리로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③이것은 아까 상각 처리 했다는데 상각 처리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예문 ②는 어순을 바로잡아 준 것이요, ③은 문장부호를 사용한 경우인데

둘 다 의미 전달에 다소 문체의 소지가 있는 방법이다. 말한 그대로 기록하고 문장부호를 제대로 챙겨 주면 다음과 같다.

cf→ ㉡'그러니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총리로서?

cf→ ㉢'이것은 아까 상각 처리 했었는데 상각 처리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한번 비교해 보라. 예문 ㉡와 ㉡', ㉢과 ㉢' 중 어느 것이 더 뜻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생동감이 있는가를. 도치된 문장에는 종결어미에 쉼표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결어미 다음에 올 문장부호는 문장의 끝말, 도치되어 문장의 끝에 자리한 어휘 뒤로 가야 한다. 문체는 이처럼 문장부호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11. 복문은 복문으로, 단문은 단문으로

㉠㉡“나는 부끄러운 나라에 사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이라크의 수많은 어린이에게 무차별로 총질하며 한 팔로는 내 아이를 감싸는 천박한 아버지.”

대구에 사는 한 주부의 탄식이고 비명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과 민족이 처해 있는 오늘날 우리의 내면 풍경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은 평화라는 이름의 보편적 가치에서 볼 때 정말 명분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라크 파병은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의 족쇄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부메랑이 될지 모릅니다. 그때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한국, 당신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아니었느냐고 신랄한 추궁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238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한 김근태 의원의 이라크 파병 반대 토론 내용이다. 이날 김 의원은 직접 작성한 원고를 가지고 거의 그대로 낭독을 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대로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다. 그런데 막상 속기록에는 그와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 수문이 라는 걸 했기 때문이다.

예문의 밑줄 부분을 음성언어 그대로 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cf→ ㉣대구에 사는 한 주부의 탄식입니다. 비명인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의 족쇄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부메랑이 될지 모

립니다.

복문을 단문으로 바꾸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간결체의 문장이 만연체로 바뀌어 버렸다. 마치 브루투스의 연설문 중 “여기 누군가 노예를 원할 만큼 비굴한 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하십시오.”를 “여기 누군가 노예를 원할 만큼 비굴한 자가 있다면 말씀하십시오.”로 바꾼 것과 똑같은 형식의 수문이다. 수문이라는 이름으로 연설의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어 놓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수문 아닌 수문을 하느라고 애쓰느니 자신의 청취 능력에 좀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예문에서 “천박한 아버”는 “천박한 어미”의 오칭이요, “평화라는 이름의 보편적 가치”는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오칭이다.

②또 한쪽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해야지 왜 청와대가 일일이 간섭하느냐 하는 요청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f→ ②’-(전략)- 왜 청와대가 일일이 간섭하느냐 하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③그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또 대결적인 노사 관계가 아니라 상생에 의한 협력적인 노사 관계로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f→ ③’그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후략)-

분명히 말하거니와 몇 글자 덜 쓰는 것은 수문이 아니다. 더구나 예문처럼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문법 구조와 문체에까지 손을 대는 것은 속기사의 월권이다. 음성언어를 그대로 살려 낸 문장들과 비교해 보라. 수문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문장들 아닌가.

월권이 심하다 보니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다.

④다음은 ○○○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cf→ ④’다음은 ○○○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이라면 실수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몇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결하겠습니다”는 계속 빼 버렸다. 법률안 투표의 시나리오까지

줄여 버리다니, 하여튼 대담한(?) 수문이다.

⑤분명히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노동부 직원들은 기업은 어떻게 되든지 경제는 어떻게 되든지 좋다고는 아무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을 분명히 전제로 했습니다. “경제 부처를 너무 미리 의식해서 경제 부처의 논리대로 따라가서는 곤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cf→ ⑤’-(전략)-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노동부 직원들은 기업은 어떻게 되든지 경제는 어떻게 되든지 좋다고는 아무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을 분명히 전제로 하고, “경제 부처를 너무 미리 의식해서 경제 부처의 논리대로 따라가서는 곤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글자라도 덜 쓰기 위해 대부분 복문을 단문으로 만든다. 그러나 위 예문은 그 반대의 경우다. 음성언어를 그대로 기록하고 보니 한 문장으로 두기에는 좀 길다고 생각했음인지 두 문장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음성언어를 그대로 살린 것과 비교해 보라. 어느 것이 문장으로서 자연스러운가.

12.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한 대로만 기록하자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는 속담이 있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이렇게 말하여 다르고 저렇게 말하여 다르다는 말이다. 아래 예문들은 수문에 의해 발언 내용이 얼마나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들이다. 수문이 가해져야 할 것과 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덜 쓰기로 인해 초래되는 속기록상의 오류들이다.

①그 이후 실제적인 정부 차원의 별다른 노력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②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회견을 하신다든지 할 때) 말씀하신 것 자체가 국법상의 행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③현재로서는 북핵문제에 의한 손실 규모가 계수화되어(→ 계수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일에 앞으로 북핵 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현실화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④그 이후에 사실은 의원님께서 후반부에 말씀하신 해고자 복지 문제가

항상 다음 노사분규의 쟁점이 되는(→ 되고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는 것이 쉽지 않음이 현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⑤현재 400만 신용불량자에 잠재 신용불량자가 350만입니다.(→ 350만 이래요.)

⑥수도 이전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야후의 네티즌들은 73%가 ‘타당하다’고 답한 반면(→ 답했고,) ‘부당하다’는 답변은 26%에 불과했습니다.

내용이나 뉘앙스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구구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다. 예문을 비교해 보고도 오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이는 언어 감각에 심각한 손상이 간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 예문들은 또 그 오류가 훨씬 더 심각한 것들이다.

⑦가급적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와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합리적인(→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⑧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제재 조치나 봉쇄 등의 정책을 통해서 고립시키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아닌가, 그리고 또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시다.)

예문 ⑦에서는 발언하지도 않았는데 “논의해서”를 보태어 놓았다. 이유는, 그런 말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였다는 대답이었다. 속기록의 작성은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다. 더 좋은 문장을 만들어 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발언자가 사용한 어휘를 함부로 빼 버려도 안 되지만, 하지도 않은 말을 보탤 필요도 없다.

예문 ⑧은 수문을 하느라고 무척이나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사용하지도 않은 어휘를 보태고(“하는 생각이 들고”), 확신에 찬 어투를 유보적인 어투로 바꾸어 놓았다(“바뀌지 않았습시다.”→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한 그대로 기록하면 될 것을 왜 이리도 피곤한 작업을 하는 걸까.

13. 문장부호와 문법을 바로 챙겨야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 온 이들 중에 혹시 반문을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식이라면 특별히 수문을 할 게 뭐가 있느냐고.

지난 호에서도 지적했듯이 발언자가 사용한 어휘와 어투는 말한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그중에서 어투를 그대로 살려 주는 것은 수문의 원리 중에서 바로 문체를 챙겨 주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문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문장부호와 문법 또한 함께 챙겨 주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몇 가지 예문으로 그 중요성만 간단히 설명해 보자.

앞에서 도치된 문장은 문장부호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설명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도치된 문장과 어순이 잘못된 문장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치된 문장은 문장부호를 챙겨 주면 되지만 어순이 잘못된 문장은 문법을 챙겨 주어야 한다. 때로는 적절한 문장부호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①농촌의 출생률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1년 동안 출생 신고가 없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예문 ①에서 부사 ‘전혀’가 수식하는 말은 어느 것인가. ‘없었다는’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도치법이라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음성언어에서는 어휘들이 제 위치가 아닌 자리에서 쓰일 때가 많다. 이를 말한 순서 그대로 문자화해 놓고 보면 문자언어로서는 부자연스럽거나 어불성설일 때가 많다. 때로는 이해도 어렵고, 때로는 엉뚱한 내용의 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어휘의 문법적 성격을 따져 제자리를 찾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①’-(전력)- 1년 동안 출생 신고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까짓 것 어순을 고쳐도 그만, 안 고쳐도 그만인데 그런 데까지 신경 쓸 게 뭐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문장의 문법 구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다 복잡한 문장에서의 수문은 아예 엄두도 못 낼 것이다.

②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손배 가압류라고 하는 사용자의 불법 과업에 대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에 의해서 개별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자체가 저해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문 ②를 읽으면서 문법상의 오류를 인지했는가? 인지했다면, 그는 속기 사로서 충분한 문법적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아니라면 탁월한 언어 감각의 소유자일 것이다. 속기록에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문장이 비일비재하다. 음성언어를 단순히 문자화하는 것만으로 번문을 끝내기 때문이

다. 예문에서 수문을 가해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다.

“손배 가압류라고 하는 사용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당한 권한 행사”

사용자의 불법 파업? 어불성설이다. 문법과 문장부호를 제대로 챙겨 주면 내용이 얼마나 명료해지는지 한번 비교해 보라.

cf→ 손배 가압류라고 하는, 불법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

③최도술 씨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직후에 아주 개략적인 수사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 짧은 문장만으로는 오류를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저 ‘들리는 대로’ 기록한 결과다. 음성언어는 호흡에 의해서도 그 뜻이 달라진다. 문장부호를 사용해 그 호흡을 살려 보자.

cf→ 최도술 씨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직후에 아주 개략적인, 수사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장부호 하나만으로도 그 뜻이 아주 명확해졌다. 문자화해 놓고도 발언의 본뜻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눈치를 못 챌다면 ‘받아쓰기’ 수준의 속기록밖에는 작성할 수 없게 된다. 위 문장의 어순을 바로잡아 주고 문장부호를 달리하면 그 뜻은 훨씬 더 명확해진다.

cf→ 최도술 씨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직후에 ‘수사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는 아주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14. 맺는말

속기록은 음성언어의 기록이다. 음성언어는 구어체다. 그 구어체에는 간결한 말투도 있고, 장황한 말투도 있다. 거친 말투도 있고, 세련된 말투도 있다. 차분한 말투가 있는가 하면 횡성수설 하는 말투도 있다. 사투리도 있고, 표준말도 있다. 이러한 각양각태의 말투(어투)는, 이미 언급한 대로, 발언하는 이의 인품과 교양, 지식수준, 성장 환경, 말하는 순간의 심리 상태가 어떠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어투가 어떠냐에 따라 음성언어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속기록에는 그러한 구어체가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한다. 물론 사람에 따라 문어체의 어투가 있을 수는 있다. 때로는 원고를 작성하여 그대로 낭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속기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구어체의 음성언어가 기본이다. 발언할 때는 열띠고 진지했는데, 속기록에는 맥 빠진 문자만 누워 있을 때가 많다. 음성언어를 들리는

대로 문자화했거나, 어투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속기록의 문체는 발언자의 어투와 일치해야 한다. 어투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 어투가 살아야 문체가 살고, 문체가 살아야 의미도 분명해지고 속기록도 현장감을 더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구체적인 연구도, 교육도, 원칙도 없이 수문이라는 걸 하고 있다. 다만 각자 오랜 실무를 통하여 굳어진 자기 나름의 원칙이 있을 뿐이다. 막상 챙겨 주어야 할 문법과 문장부호는 챙겨 주지를 못하면서 어투와 어휘에만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동일인의 발언임에도 문체에는 통일성이 없고, 뜻하지 않은 오류가 빈발하고 있다.

말하는 대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청취 능력이 필수적이다. 수문을 하기 위해서는 청취 능력 위에 문법 지식이 더해져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원칙은 당장 집어치워라. 몇 글자씩 덜 쓰는 것은 수문이 아니다. 어투를 멋대로 바꾸어 주는 것 또한 수문이 아니다. 속기록의 증거성과 역사성을 생각할 때 그것은 또 하나의 왜곡일 뿐이다. 조선왕조실록을 작성한 사관들이 오늘날 역사가들에 의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작성한 속기록에 의해 평가를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속기록은 속기사와 상관없는, 타인들의 음성언어 기록이 아니다. 그 속에는 동시에 속기사의 지식수준과 의식과 태도 또한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세월이 갈수록 속기사라는 직업이 두려워진다.

(keeper@assembly.go.kr)

대회의 일반적인 형태

실험적인 서신과 Minute-taking 대회의 취소. 객관적이지 않음. 시간과 노력 소비적(독일).

대회 종류

1. 인쇄된 사본에서 원문 만들기 : 키보드 사용 또는 미사용.
2. 받아 적은 문서에서 원문 만들기(속기, 빠른 필사, 여러 나라 언어로)
3. 디지털 문서의 원문 처리: 원문 교정, 전문적인 워드 프로세싱
4. 조합(경쟁자의 다 원자가) (체코 공화국)

일반적인 연령 범위

모든 대회에 대해: 학생 (16세 까지), 주니어 (17-20), 시니어 (+ 20) (체코 공화국)

일반-심사위원 : 회원국에서 10 에서 15 명의 구성원, 심사위원장이 선택.

속기 기술. 2 가지 자료

필사본을 플로피 디스크, cd-롬, LAN, 인터넷 등으로 전달 허용. 인쇄된 작품은 한 줄에 최대 50자로 인쇄되어야 하고 줄 간격은 1, 5(이탈리아)

속기기술 3. 대회의 실시

속기 받아쓰기

속도를 늘리며 연속 받아쓰기 (각 15초, 3가지 특성, 처음 15초는 80자로부터 시작함). 결과: 99%의 글자가 올바른 최선의 연속 3분에서 올바른 글자의 수. 최대 2,5 시간의 필사 시간. ex aequo의 경우, 필사 시간이 결정 (체코 공화국)

필사 시간

모든 언어 모든 분야에 대해서 180 분 (독일)

90 분 (이탈리아)

120 분 이상, 각 언어에 대해 동일한 시간 (핀란드)

기본 문서의 번역을 메모로 분할.

세로 줄의 이용과 분리를 다시 고려하고 연구해야 함(위원회에서)(핀란드)

빠른 필사

증가되는 속도로 8 분 연속 받아쓰기 (3 가지 특성을 가진 각 15초, 처음 15초 80 글자로부터 시작). 결과: 99%의 글자가 올바른 최선의 연속 3분에서 올바른 글자의 수, 허용된 8분의 필사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했을 경우 매 15초당 1 포인트 가산 (체코 공화국)

여러 나라 언어 대회

속도를 늘리며 최소 두 가지 외국어 3 분 연속 받아쓰기 (3 가지 특성의 각 15초, 처음 15초는 70 글자로 시작).결과: 마무리가 된 언어의 수를 기초로 함. ex aequo의 경우에는 각 언어의 가장 성공적인 3분 동안의 좋은 글자의 총 수. (체코 공화국)

Rom 공시 유지 (2 가지 언어, A, B 또는 C 범주에서, 그 중 하나는 모국어일 수 있음. (이탈리아)

속기 조항 4 심사위원

처음 통제에서(실수를 가리킴) 경쟁자들이 관여할 수 있음 (독일 + 이탈리아, 여러나라 언어를 위해서).

속기조항 7 대회의 조직

심사위원장은 각 받아쓰기, 원문과 시간 컨트롤러가 있을 것을 확인해야 한다. (독일).

속기조항 9. 등급 목록과 자격증

모든 사용된 기술과 사용 기술의 표시에 대해서 한 가지 등급 목록만. 사용된 기술은 등록 양식에 언급해야 함. 심사위원이 대회를 임의로 통제 (이탈리아)

세계 챔피언은 한 명만, 사용된 기술과 독립적으로(이탈리아)

빠른 필사: 받아쓰기가 끝난 후 3분 이내에 전체 필사를 끝낸 이들을 위

해 목록을 분리함(이탈리아, 스위스).

키보드 대회

경쟁자 나누기

키보드 경쟁과(매크로 없이, 약어) 원문 만들기 경쟁을 나눈다.(매크로 있음, 약어, 스캐너 없음, 음성인식) (독일).

키보드를 가진 그룹의 경쟁과 (PC, 타이프라이터, 속기기계…) 키보드를 가진 그룹을 나눈다(음성인식…). (체코 공화국, 벨기에)

키보딩(약어가 있음과 없음) 속기/음성인식을 나눈다. 각 나이별로 세계 챔피언 한명만(스위스)

목록은 하나만, 사용된 기술의 표시가 있어야 함(이탈리아).

“스트로크”개념은 더 이상 규칙에서 사용되지 않는가(핀란드)

다른 가능한 방법을 나타내기 위해 키보딩 대회의 이름이 바뀌어야 함(핀란드)

이것이 오래 된 대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 세계 기록을 비교할 때(핀란드)

키보드 기계를 여러나라 언어 대회에 사용될 수 있음(핀란드)

스트로크 대신, 문자를 이용 (Secretary-treasurer) .

시간: 20 분 (이탈리아, 스위스).

원문: 최소 30000 글자(독일).

최소 prestation: 분당 netto (240, 300, 360 타). 최대 오자율 없음(체코 공화국)

평가: 경쟁자가 별도로 원문을 추가하면 실수 하나로 계산, 추가된 문자를 총 bruto 문자에 추가하지 않음.

글자 계산: 대문자 또는 합성문자에 대한 타수는 특별히 없음 (secretary-treasurer).

원문 준비: 조정자가 이미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EU-주제에 관한 원문을 발견할 수 있다.

대회 마지막에 경쟁자가 전달하는 원문은 플로피 디스크, cd-롬 등으로 보낼 수 있거나 (스위스, 이탈리아) LAN 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낼 수 있다.(이탈리아).

원문 교정

교정 수를 300으로 늘림. (독일)

결합 등급

결합 속기 + 키보딩

분류	1	2	3	4	5
A	16000	17000	18000	19000	20000
B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C	6000	7000	8000	9000	10000

(스위스)

결합 키보딩 + 속기 + 원문 교정

경쟁자들은, 세 부류에서, 대회 후에 점수를 받은 사람의 수에 기초해서 점수를 받는다. 곧, 각 대회의 점수는 참여자 수를 고려한 것이다(체코 공화국).

기타 제안

중앙 위원회와 총회에 대한 제안은 회담 최소 2달 전에 secretary-tresorer 에 도달해야 함. secretary-tresorer 는 가능한 빨리 안을 전달해야 함. 예, 이메일을 국가 단체에 보내서 국가 단체가 그들의 관점을 시간 내에 준비하도록(독일)

독일 국가단체는 인터넷 경쟁에 대한 토론 방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고, 특히 Zaviacic 과 Trivulzio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즉시 그들의 분쟁을 멈추게 함(독일)

새로운 Intersteno-대회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고, 분명한 규칙이 제공되고, 중앙위원회가 수락할 것임. 경제적 수단의 이용은, 이러한 대회에서 나오는, 금전의 이용은 공개적이고 분명해야 한다. Intersteno가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회는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독일).

2004년 12월까지 심사위원과 대회의 조직과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 특별 위원회를 확정한다.(이탈리아)

두 대회를 마치고 결과를 전달해야 하므로 작품 평가에 시간제한을 둔다 (이탈리아).

회의 전과 회의 동안 속기와 키보드 대회 모두를 위한 문서로 된 의무 절

차 과정을 준비한다. 우리는 우리의 회장 Mr. Devriendt가 체험한 경험을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Mr. Devriendt 는 다음 회기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이고, 일상 업무를 줄여야 한다. (이탈리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장으로부터, 키보딩 대회를 위한 원고를 디스켓이나 CD롬 준비해야 함을 기술하는 문서가 즉각 나와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이와 같은 대회의 자동 평가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탈리아)

심사위원장은 평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대회당일, 키보딩 대회의 기본 원고를 내놓는다. 연설 대회를 위한 평가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때에도 동일하다.(이탈리아)

키보딩 대회의 실시간 결과 “보여주기”가 실용적이고 가능한지 결정하고, 대회와 결과 사이의 시간을 크게 줄이는지 결정한다(Wein에서 이 시간차는 5일 이다). (이탈리아)

중앙 특별위원회 또는 다른 국가가 준비한 연설 대회 원문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본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스페인어 원문을 준비하는 등. (이탈리아)

일반: 실무 단체에서 대회를 토론하기 위한 제안, 지난 두 번(세 번)의 세계 챔피언 대회 동안 최소 한 명의 참가자가 있었던 국가 단체로만 구성됨.(체코 공화국)

조정자 외에도(지금까지는 심사위원장), 각 종류별 대회에 대해서 전문가를 지정하여 특정 대회를 조정하도록 한다. 심사위원장이 이 메일로 국가 그룹이 사람을 추천하도록 한다. (체코 공화국)

웹 사이트 www.intersteno.org

체코 공화국은 이미 www.intersteno.org에 홈페이지를 준비하였다.

1. 구조

1.1 이 사이트는 포털 사이트이다: 각 국가단체가 국가 내용을 담당한다.

1.2 각 국가 단체의 홈페이지는 링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1.2.1 3 개 언어로 된 속기 법령.

1.2.2 연맹에서 누가 어떤 기구의 회원인지에 대한 정보.

1.2.3 국가 단체의 책임에 대한 정보.

1.2.4 각 국가 단체를 교육시키는 것은 이 제안 포함할 수 있다.

1.2.5 대회(제안: 각 국가 단체가 국가 단체의 편에서 인터넷-대회를 조직하고, 다음 세계 챔피언 대회 조직자와 중앙 위원회의 협의가 이루어진 직후에, www.intersteno.org 에서 이 대회에 링크한다.

1.2.6 각 언어별로 "Newsletter". 국가 단체, 특정 위원회, 대회 조정자 등이 링크를 놓을 수 있고, 국가 대회의 결과, 대회 규칙, 다른 국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 등의 링크를 놓을 수 있다.

2. 비용

2.1 3.9. 2004까지 도메인과 웹 사이트는 체코 공화국 Interinfo와 민간 비용으로 운영하였다.

2.2 만일, 1.10.2004 이후 1.2.4 까지 1.2.6 are 중앙 위원회의 수락을 받았고, 체코 공화국 웹메스터가 모든 교육, 대회, 뉴스레터 링크를 제공하고, Intersteno가 웹사이트 비용을 부담한다. (체코 국가 단체의 회비를 줄임으로써) (체코 공화국)

최종안 (수정 판)

INTERSTENO 의 규약(les Statuts; die Statuten)

조항 1. (명칭, 등록 기관과 연합의 특성)

1.1. INTERSTENO이라는 명칭 하에 - 국제 정보 처리 연맹 - 연합을 결성하였다. 이 법령에서는 이 연합을 :연맹이라고 한다.

1.2. 연맹의 공식적인 소재와 관할권은 본에 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연합 등록(Register of Publicly Acknowledged Associations)에 가입하였다.

1.3. 연맹의 행정적인 본부는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이 주재하는 곳에 위치한다.

1.4. 연맹은 비영리 조직이다;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없다. 연맹의 재산은 규약에 일치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조직의 재산으로부터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도 없다. 어느 누구도 연맹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용으로부터 또는 높은 회원비용으로 이익을 취할 수 없다.

1.5. 연맹은 정치적, 종교적 성질의 토론을 허락하지 않는다.

조항 2. (연맹의 목적)

2.1. 연맹은, 급료가 없는 활동을 기초로, 세계 혜택을 누리는 활동에 대한 독일 법에서 규정된 대로, 오로지, 직접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모든 국가 국민들 사이의 국제적인 사고와 이해를 촉진시킨다.

2.2. 연맹의 활동 영역은 보고, 문서와 정보 처리 절차, 그리고 서기적이다. 이 규약에서, “보고”는 말로 한 것을 붙잡는 것과 적힌 글을 구체화하는 것을 뜻하고, “정보 처리”는 원문과 원문 관련 자료를 모든 이용 가능한 기술을 이용해서 의사소통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서직”은 비서직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문 기술을 말한다.

2.3. 연맹의 목적은 한 가지 이상의 활동 영역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사람, 전문가가 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이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국제적인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은 연맹이 의도하는 사람들이다. 이 규약에서, 이들을 전문가 집단이라고 부른다.

2.4. 연맹은 활동영역에 관련하여 회원 국가들의 문화와 가치의 상호이해를 자극한다.

2.5. 특히 연맹의 목적은:

- a. 모든 국가에서 연맹 활동 영역의 전문가, 교사, 학생들을 연합하는 것
- b. 위에 언급한 전문가, 교사, 학생들이 직업 생활 동안, 가장 현대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능력과 실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위에 언급한 학생들, 특히 개발 도상국 학생들에게, 적절한 연수 및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것;
- c. 이들 전문가 집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합법적이고 타당한 기술과 사업 조사 촉진;
- d. 전문가 집단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에 기초한 국가 및 지방 정부, 비국가 조직 또는 Unesco와 같은 국제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 협력;
- e. 지방 정부, 공공 기관, 민영회사와 협력한 전문적인 업무의 경험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정보를 모으고, 회원들에게 전파하여, 이들이 인적

자원을 최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

f. 회의를 조직하고 회원들이 개인적 연락을 정함; 활동영역에서 국제 대회를 조직하고, 가능하면 세계 챔피언 대회를 조직함; 활동영역에 대한 연합 연구 추진: 도덕적 2.3에서 언급한 전문가 집단의 도덕적 물질적 관심.

조항 3 (연맹의 구조)

3.1. 연맹의 기구들로는:

- a. 총회
- b. 중앙 위원회;
- c. 이사회;
- d. 국제 대회 심사위원
- e. 과학 위원회;
- f. 감사 위원회.

3.2. 이 규약에서 국제대회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이라고 한다.

조항 4. (회원 분류)

4.1. 연맹의 회원은 국가단체, 개인 회원, 명예 회원 등이다.

4.2. 국가 단체는 연맹의 모든 회원 들이다. 국가 단체는 사법이나 공법의 인위적인 법인이어야 한다. 각 국가 단체는 자체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조직할 수 있고, 최소 전문가와 교사들 해당 국가에서 연맹이 활동하는 영역의 최소 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사들을 대표해야 한다. 각 국가는 하나의 국가 단체만 허용된다.

4.3. 개별 회원은 개인, 회사, 연합 또는 다른 조직과 의회 보고 서비스 등이 될 수 있고, 연맹의 활동 영역 확장에 개인 회원이 매우 중요하다.

4.4. 중앙 위원회의 제안으로 총회는 연맹에 특별한 서비스를 행한 개인에게 명예 회원직을 수여할 수 있다. 명예 회원은 중앙 위원회와 총회의 회의에 참여할 권한이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조항 5 (회원 가입).

5.1. 연맹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가망 국가단체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지

원하고,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게, 조항 2.3에 언급된 전문가 집단을 최소한 하나 대표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만 국가 단체가 연맹의 완전한 회원이 될 수 있다. 총회의 비준을 따라서 중앙 위원회는 이사회의 제안대로 국가 단체를 가입시킬 권한이 있다.

5.2. 한 국가에서 동일한 전문가 집단을 대표하는, 두 개 이상의 조직이, 회원에 지원을 하고 한 개의 국가 단체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는, 중앙 위원회가 이사회의 제안에 근거하고 총회 비준을 따라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가진다.

5.3. 연맹은, 아직까지 국가 단체가 없는 국가의 국가 단체의 형성을 장려한다. 결성되기까지 이사회는 개인이나 조직이, 투표권 없이, 연맹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한을 줄 수 있다.

5.4. 20.1항에서 언급한 전문적 분야가 형성되었을 때, 여기에 참석하는 전문가 집단의 조직은, 그들의 국가에 국가 단체가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연맹의 개인 회원들이다.

5.5. 국가 단체가 아직 없는 국가의 다른 개인 회원들도 조항 5.7의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국가 단체가 존재하는 다른 개인 회원들은 조항 5.8의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5.6. 전문가 분야에 속하지 않고, 연맹에 가입을 원하는 유망 개인 회원들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지원을 하여야 하고,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그녀의 회원 가입이 연맹을 위해 중요함을 증명해야 한다.

5.7. 총회의 비준에 의거, 중앙 위원회는 이사회의 제안을 기초로, 전문가 분야에 속하지 않고, 국가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개인 회원을 가입시킬 권한이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 국가 단체가 후에 형성이 되면, 이사회는 이미 가입을 한 개인 회원이 계속 회원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계속 회원이 될 수 없으면, 이사회는 개인 회원이 새로 생긴 국가 단체에 들어가도록 권한다. 이사회는 이 문제에 관해 결정해야 할 제안을 중앙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8. 중앙 위원회는 이사회의 제안에 기초해서 전문가 부분에 속하지 않고 국가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개인 회원의 가입을 총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가입은 해당 국가 단체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중앙 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결론을 내리면, 총회

에 가입을 제안할 권한이 없다.

조항 6 (회원의 포기, 제적)

6.1. 회원을 포기하고자 하는 국가 단체와 개인 회원은 서면으로 당해 년도가 끝나기 3개월 전에 서기관(secretary-treasurer)에게 알려야 한다. 서기관(secretary-treasurer)는 중앙 위원회에 가능한 빨리 알린다. 사직한 회원들은 그들이 등록한 년도에 대한 가입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6.2. 총회 비준에 의하여, 중앙 위원회는 이사회에 제안을 기초로 회원 비용을 2년 이상 지체한 국가 그룹 또는 개인 회원을 추방할 권한이 있고, 연맹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국가 단체 및 개인 회원을 배제시킬 권한이 있다. 이사회는 회원의 활동이 연맹의 이익과 반하는지 중앙 위원회를 확인시켜야 한다. 추방된 회원은 연체 가입비를 지불해야 한다.

6.3. 추방 결정은, 제적에 대한 건의와 이유를 담고 있는 편지를 발송한 후 한달 안에, 제적 대상 회원이 서면으로 이를 받아들임을 공지한 후에만 결정할 수 있다. 회원의 서면 인정서가 구두로 해명할 것을 요구하면, 이러한 회원은,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비준하는 총회에 나와야 한다.

조항 7 (대표)

연맹은 법적으로 회장이 대표하고, 회장이 결석시 부회장 또는 서기관(secretary-treasurer)가 대표한다.

조항 8 (총회; 구성과 권한)

8.1. 총회는 국가 단체의 대표단, 개인 회원들로 구성된다. 연맹에서 권위가 가장 높다.

8.2. 총회는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다.

8.3. 총회의 임무는 특히:

- a. 중앙위원회의 안을 받아서, 회장, 부회장, 서기관(secretary - treasurer) 등을 이사회 회원으로 지명하는 것;
- b. 중앙 위원회의 안을 받아서, 감사 위원을 지명하는 것;
- c. 중앙 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승인한 차기 년도 예산안을 비준하기;
- d. 다음 총회 회의가 2년 동안 열리지 않을 경우, 중앙 위원회가 잠정

- 적으로 제 3년도 의 예산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하기;
- e. 중앙 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승인하고, 감사위원의 보고를 받아 들여, 마지막 회의 이후 만기된 기간에 대한 연맹의 회계 비준하기;
 - f. 중앙 위원회의 안을 받아 들여, 국가 단체와 개인 회원의 다음 2 년 간의 회비를 정 하기;
 - g. 총회의 다음 회의가 2년 안에 열리지 않았을 경우에 중앙 위원회가 국가 단체와 개인 회원의 다음 3번째 년도의 회비를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 비용은 이전 비용의 5퍼센트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도록 하기;
 - h. 중앙위원회의 새로운 국가 단체 가입과 개인 회원의 가입, 전문가 부문의 가입 등에 관한 결정 비준하기 .
 - i. 중앙 위원회의 안을 받아 들여서 규약 개정하기;
 - j. to approve and 중앙 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서, 23항에 언급된 세칙 개정하기;
 - k. 중앙 위원회가 제출한 안 결정하기;
 - l. 연맹 해체하기;

조항 9 (총회; 회수, 공지, 절차)

- 9.1. 일반적으로 총회는 연맹의 국제회의 동안에 회담을 갖는다. 어떤 사건에서든 총회는 삼년마다 한번 씩 회의를 한다.
- 9.2. 특별 총회는 연맹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시 소집된다. 연맹 총 회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어야 한다.
- 9.3. 국가 단체와 개인 회원은 일반 우편이나 이메일로 최소 3개월 전에 총회에 초청된다. 총회 초청 시 의제에 대해서도 공고한다.
- 9.4. 각 총회에 대한 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결의안은 말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회장과 서기관(secretary-treasurer) 또는 이들의 대리인들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
- 9.5. 의제에 나온 항목만 결정할 수 있다.

조항 10 (총회; 투표와 결정)

- 10.1. 각 국가 단체는 세 명의 대표단을 지명할 수 있다. 해당 국가 인구

가 5백만 명 이상일 경우, 매 5백만 명 이상에 대해서, 대표자 한 명이 추가적으로 지명될 수 있다; 최대 대표자는 12명이다. 각 대표자는 한 표씩 가지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대표자만이 투표를 할 수 있다.

10.2. 이들 대표자들 외에도 각 국가 단체는 다른 대표자들을 총회에 보낼 수 있지만, 이들은 투표는 할 수 없다.

10.3. 각 개인회원은 한 표를 가지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개인 회원만이 투표할 수 있다.

10.4. 총회는 참석한 대표자와 개인 회원 수와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24.3과 25.3에 있는 마땅한 관례대로, 표가 많은 쪽이 결정된다.

조항 11. (중앙 위원회, 구성과 권한)

11.1. 중앙 위원회는 단체가 속한 국가의 인구와는 상관없이 각 단체당 한 명씩의 국가 단체의 대표자와 이사회 회원, 그리고 20.3 조항에서 언급한 전문가 부문의 조정자들로 구성된다.

11.2. 중앙 위원회의 각 회의를 위해서 국가 단체의 대표자들은 국가 단체가 지명한다. 이사회의 회원은 중앙 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총회가 임명한 회장, 부회장, 서기관, 지명된 심사위원과 과학 위원회의 조정자들이다. 전문 분야 조정자들은 이 분야에서 지명한 사람들이다.

11.3. 개인 회원과 손님들은 중앙 위원회 회의에 초청될 수 있다.

11.4. 중앙 위원회의 임무는 이사회의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고 필요할 때, 개정 후 필요할 때 이사회의 제안을 승인하는 것이다.

11.5. 중앙 위원회의 임무는 특히:

- a. 다음 년도 그리고 두 번째 연도의 예산과 국가 단체 및 개인 회원의 회비를 이사회 에서 제출한 대로 잠정적으로 정하기.
- b. 총회가 마지막 회의 후 이년 동안 회의를 가지지 않을 경우, 조항 8.3.g에 나온 마땅한 관례대로 세 번째 년도에 대한 국가단체와 개인 회원 회비를, 이사회에서 제출한 대로 정하기;
- c. 마지막 회의 이 후 기간 동안의 연맹 회계를 잠정적으로 결정 한다;
- d. 심사위원장 지명과 보조자 지명;
- e. 과학 위원회 조정자와 회원 지명하기;

- f. to decide on 규례 변경에 관한 이사회 의 제안, 조항 23에 언급된 세칙의 채택과 변경, 새로운 회원 가입시키기, 감사 위원 임명, 특별 문제 연구와 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전문 분야의 창설
- g. 국가 단체와 개인 회원에 관한 이사회 의 제안 결정하기
- h. 국제 회의에 관한 이사회 의 제안 결정하기
- i. 총회에 회장, 부회장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의 이사회 회원 임명에 대한 제안하기 또는 총회가 임기 기간 말까지 열리지 않을 때, 잠정적으로 이사회 회원들을 임명하기

조항 12 (중앙 위원회; 회수, 공지 그리고 절차)

- 12.1. 중앙위원회 회의는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이 소집한다. 중앙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회의를 갖는다.
- 12.2. 다섯 개 국가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중앙위원회 특별 회의가 서기관(secretary-treasurer)에 의해서 소집될 수 있다.
- 12.3. 이사회는 중앙 위원회에 초청할 개인 회원과 손님을 결정한다.
- 12.4.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은 국가 단체와 개인 회원과 손님이 중앙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일반 우편이나 이메일로 최소 회의 일자 5개월 전에 알린다. 이러한 공지는 연맹 회원들이 중앙 위원회에 제의를 할 수 있는 마감일이 마감일이 있다.
- 12.5. 최소 회의 3 개월 전에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은 국가 단체, 초청된 개인 회원 그리고 손님에게 일반 우편과 이메일로 이사회 의 안전에 대해서 알린다.
- 12.6. 회의 일 최소 1개월 전에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은 일반 우편이나 이메일로 안거에 대한 이사회 의 의견을 나눈다.
- 12.7. 중앙 위원회의 각 회의에 대한 기록을 보존한다. 기록은 회장과 서기관(secretary-treasurer) 또는 이들의 대리인들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

조항 13 (중앙 위원회; 투표와 결정)

- 13.1. 중앙 위원회는 과반수보다 한명 더 많은 회원이 참석하면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
- 13.2. 중앙 위원회는 절대 과반수로 결정한다. 각 회원은 투표권이 하나

씩 있다. 표수가 동일한 경우는 회장의 투표가 결정한다.

13.3. 초청된 개인 회원과 손님은 토론에 참석할 수 있다. 그들은 조연자 역할을 하고, 투표권은 없다.

13.4. 서기관(secretary-treasurer)는 연맹 회원들에게 일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중앙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능한 빨리 알린다.

조항 14 (이사회, 구성과 권한)

14.1. 이사회는 연맹의 영구 집행 위원회이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관(secretary-treasurer), 19.6항에 언급된 심사위원 조정자, 그리고 조항 17.1에서 언급된 과학 위원회 조정자로 이루어 진다.

14.2. 부회장의 결석 시 회장의 대리인도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이다.

14.3. 회장, 부회장, 그리고 서기관은 중앙 위원회의 안을 받아서 총회에서 4년 기간 동안 임명한다. 퇴임 임원은 재선 될 수 있다. 심사위원 조정자와 과학 위원회 조정자들은 이전 이사회 회원들이다.

14.4. 총회의 비준을 따라서, 중앙 위원회는 이사회의 안을 받아들여, 부회장의 사망, 은퇴, 질병의 경우에 대리자를 임명한다. 이러한 안은 즉시 모든 중앙 위원회 회원들에게 말해야 하고, 이들이 일반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잠정적인 동의를 할 수 있다. 최후의 동의는 다음 총회에서 해야 한다.

14.5. 이사회 임무는:

-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 상황에 기초해서 다음 년도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전략 변화를 이룸으로써 연맹의 활동이 지속되도록 하기;
- 새로운 국가 단체 형성 촉진;
- 모든 행정적인 의무 이행하기;
- 중앙 위원회에 가까운 장래의 연맹의 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국제 대회 규칙을 제안하기;
- 연맹의 재무적인 사안을 통제하고 중앙 위원회에 연간 예산 제출하기;
- 중앙 위원회와 총회에 대한 의제 입안하기.

14.6. 회장, 부회장, 서기관(secretary-treasurer)는 일상의 경영에 책임

을 진다.

14.7.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은 이사회와 다른 회원들과 의사를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연맹의 다른 기구들과도 의사소통을 한다. 연맹의 장부 부기를 한다.

14.8. 서기관(secretary-treasurer)는 매년 지난 해 이사회와 활동 보고서와 예산을 만들고, 다음 해 예산을 계획한다. 이사회가 동의하면, 서기관(secretary-treasurer)는 보고서와 예산안을 중앙 위원회에 제출한다.

14.9. 심사위원의 조정자는 이사회가 국제 대회에 대한 정보를 알도록 한다. 심사위원 조정자는 국가 단체 또는 개인 회원이 대회에 관해서 가지는 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장의 의견을 이사회에 알린다.

14.10. 과학 위원회 조정자는 이사회가 연맹의 활동 영역 내에 있는 과학적 기술적 발전에 대한 정보를 알도록 하고 국가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 내의 전문가 집단과의 접촉에 대한 정보를 이사회가 알도록 한다.

조항 15 (이사회; 회수와 절차)

15.1. 이사회 회원들은 연맹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이메일로 서로 연락을 유지한다.

15.2. 모든 이사회 회원들은 매 년 중앙 위원회 회의 동안에 만난다. 이사회 회원들은 회장이나 부회장 그리고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직접 만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원들의 여행 경비, 호텔 투숙비를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조항 16 (이사회; 투표와 결정)

16.1. 이사회 각 회원은 한 표씩 갖는다.

16.2. 이사회는 만장 일치로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 회원 중 한 명이 부재일 경우, 그리고 나머지 회원들의 표수가 동일한 경우 회장의 투표가 결정한다.

조항 17 (과학 위원)

17.1. 과학 위원은 조정자와 두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정자와 위원들은, 이사회와 의 제안을 받아서 중앙위원회에서 4년 동안 임명한다. 퇴임

위원은 재선될 수 있다.

17.2. 과학 위원회의 임무는:

- a. 연맹의 활동 영역 내의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조사한다;
- b. 이에 기초해서 문화적 과학적 프로그램을 이사회에 제안한다. ;
- c. 국가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에 있는 전문가 집단들과 연락을 구축하고, 이러한 연락 사실을 이사회에 알려서, 이사회가 이들 국가의 국가 단체 형성을 촉진하도록 한다;
- d. 해당 국가 단체의 위원회를 구성에 일치되게 Intersteno-회의 동안에 강의를 구성하고, 다른 Intersteno-회의 동안에 이사회와 일치되게 구성한다.

조항 18 (감사 위원)

18.1. 총회는 세 명의 대표자로 구성된 감사 위원을 지명한다.

18.2. 세 국가 단체가 차례로 이 위원회 대표자들을 임명한다. 로테이션 계획은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이 계획하여, 마지막 총회에서 한 국가 단체가 이 위원회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채택되었으면, 다음에는 한 국가 단체만 올 수 있게 한다.

18.3. 서기관(secretary-treasurer)는 감사 위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재무적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8.4. 총회 회의에 앞서서, 감사 위원회는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의 재무 문서를 검사한다. 총회 회의에서 감사 위원회는 결과를 보고한다.

조항 19 (심사위원)

19.1. 연맹의 활동 영역 내에 있는 국제 대회를 조직할 수 있다. 모든 회원들은 각자 자기 국가에서 가능한 많은 참가자들이 있도록 노력한다. 참가자들은 조직 위원회에서 정하는 참가비를 내야 하고, 이사회에 제안으로 중앙 위원회가 결정한 대회 규칙을 따라야 한다. 심사위원은 참가자들의 결과를 판정하고 이 결과를 대회 마지막에 발표한다.

19.2. 심사위원의 임무는 더 나아가서:

- a. 국제 대회를 조직하고 대회 동안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대처하기;

b. 다음 회의 조직의 필요와 기술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사회에 대회 규칙의 개선을 제안하기 ;

c. 이사회에 국가 단체와 개인 회원이 제안하는 대회 규칙에 대해서 조언하기

19.3. 심사위원은 최소 두명의 심사위원장으로 구성된다. 각 심사위원장은 연맹의 활동 영역과 연관된 많은 대회들을 다루고, 보조자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과 보조자들은 심사위원이다.

19.4. 각 국제 대회동안 심사위원은 보조자의 도움을 받는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이고 심사위원은 아니다.

19.5. 심사위원장과 보조자들은 중앙 위원회가 이사회의 제안을 받아서 4년 기간동안 임명한다. 퇴임 심사위원은 재선될 수 있다.

19.6. 심사위원장이 보조자 중 한 명을 심사위원 조정자로 임명할 수 있고, 조종자는 이사회 회원이 된다. 심사위원장은 서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심사 위원 조정자가 이사회에서 심사위원들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항 20 (전문적 분야)

20.1. 연맹의 틀 안에서, 전문 분야가 형성될 수 있다. 전문 분야는 특정 전문가 집단의 협력 집단이다. 특정 전문가 집단의 조직으로 구성되고 다섯 개의 국가로부터 온 조직이 참여해야만 형성될 수 있다.

20.2. 총회 비준에 따라서, 중앙 위원회는 이사회의 제안을 받아 전문가 부문 구성에 동의할 권한이 있다.

20.3. 전문가 부문은 재량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직될 수 있고, 연맹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목적을 가진다. 중앙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는 조정자를 임명한다.

20.4. 전문가 부문에 속하는 조직들은, 연맹의 개별 회원이다.

20.5. 전문가 부문에 속하는 조직들이 회원권을 사임하거나 추방될 때, 그 결과로, 다섯 개 국가로부터의 조직들은 더 이상 전문가 부문에 속하지 않고, 이 부문은 이 규약에 근거해서 존재가 중단된다. 서기관 (secretary-treasurer)는 연맹의 모든 회원에게 즉시 이 상황에 대해서 알린다.

조항 21 (Intersteno-회의와 다른 Intersteno-회의)

21.1. 가능하면, 2년 또는 3년 마다 국제 Intersteno-회의가 열린다. 매 회의에서 국제 대회 또는 다른 국제적 활동들이 조직되고 강의를 할 수 있다.

21.2. Intersteno-회의는 국가 단체 중 하나가 조직하고, 개별 회원과 협력하여 조직된다.

21.3. 국제적인 Intersteno-회의를 조직하는 국가 단체는 조직 위원회를 세우고, 각 회의의 장을 임명한다.

21.4. 조직 위원회는 이사회와 회의 계획을 미리 상의한다. 계획은 중앙 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급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1.5. 재무적으로 조직 위원회는 회의 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만 책임을 진다.

21.6. 연맹은 조직 위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1.7. 조직된 Intersteno-회의가 없으면, 국가 단체와/또는 개별 회원에 의해 작은 규모의 국제 회의를 조직할 수 있다. 국제 Intersteno-회의로 인식되기 위해서, 이사회의 제안을 받아 중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 위원회가 이사회의 제안을 받아서, 재무적인 설계, 회의 동안 국제 대회가 열릴 것인가, 회의동안 총회 회의가 열릴 것인가 등을 포함함 국제 Intersteno-회의의 계획에 대한 결정을 한다.

21.8. Intersteno-회의는 또한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조직될 수 있다. 이러한 Intersteno-회의는 조항 21.7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항 22 (회계 기간; 재무적 자산; 부채)

22.1. 연맹은 1월 1일에서 시작하여 12월 31일 마감하는 회계 기간을 갖는다.

22.2. 연맹의 재무적 자산은 :

- a. 회원의 가입비;
- b. 다른 회비 및 연맹 발행물의 판매 이익;
- c. 지원금, 기부금, 유산

22.3. 각 국가 단체는 이들이 권리를 준 대표자에 대해서 연중 회비를 지불한다

22.4. 총회는 중앙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국가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회비를 정할 권리가 있다.

22.5. 개별 회원은 중앙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서 총회가 정한 연회비를 지불한다. 이 비용은 개별 회원에 따라 다르다.

22.6. 명예 회원은 회비를 내지 않는다.

22.7. 연맹은 자본에 대해서만 재무적인 책임을 갖는다. 국가 단체와 개별 회원은 재무적인 책임이 없다.

조항 23 (세칙, 채택과 변경)

23.1. 이사회는 세칙을 만들어 규약을 구체화할 수 있다. 세칙 조항들은 규약에 반할 수 없다.

23.2. 세칙은 개정 후, 중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앙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총회가 채택한 후에는 연맹의 모든 회원들에게 구속력을 지닌다.

23.3. 채택된 후 세칙은 중앙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23.4. 세칙의 채택을 위해서, 그리고 세칙 개정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참석한 대표자와 개별 회원 수에 상관없이 총회에서 다수결 투표를 한다. 세칙 채택과 개정을 위한 총회 회의 초청 글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조항 24 (규약의 변경)

24.1. 규약은 중앙 위원회의 제안으로, 일반 총회 또는 이사회 또는 다섯 국가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되는 특별 총회에서 개정된다.

24.2. 이러한 총회 초청 글에서 규약 개정안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24.3. 규약 개정을 위해서 국가 단체와 개별 회원의 최소 4분의 3이 참석한 총회 회의에서 모든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가 요구된다.

24.4. 이런 정족수가 형성되면, 새로운 총회를 최대한 빨리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 단체와 개별 회원의 수에 관계없이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한다. 이는 총회가 규약의 개정을 결정하는 회의 초청 시에 언급되어야 한다.

24.5. 규약의 변경은 독일 서기에 의해 집행된 후 효력을 발휘한다.

Art. 25 (해체)

25.1. 연맹은 기술된 목적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해체된다.

25.2. 이사회와 중앙 위원회의 제안으로 특별 총회 회의를 소집하여서 연맹의 해체를 결정한다.

25.3. 연맹 해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국가 단체 및 개별 회원의 4분의 3이 참석한 회의에서 3분의 2 과반수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족수가 형성되지 않으면, 새로운 총회를 최대한 빨리 소집하고, 이 회의에서 국가 단체와 개별 회원의 수에 상관없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는 총회가 해체를 결정하는 회의의 초청 문구에 언급되어야 한다.

25.4. 연맹은 이사회 회원과 청산 위원들에 의해서 해체된다.

25.5. 모든 비용보다 청산 비용 또는 예치 목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돈을 정리하고, 순 자산은 국제 적십자 위원회에 지불한다.

조항 26 (마지막 항)

국가 단체와 개별 회원은 현재 규약에 나오지 않은 모든 경우는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이러한 결정은 총회에 의한 비준에 따른다.

처음 Intersteno-회의는 1887년 런던에서 열렸다. 이 규약은 로마에서 채택되었고, 1995년 7월 20일 암스테르담에서 채택된 규약을 대체한 것이다. 독일 공증인에 의해서 실행되고, ...

인터스테노의 규약

조항 1. (명칭, 등록 기관과 연합의 특성)

- 1.1. INTERSTENO이라는 명칭 하에 - 국제 정보 처리 연맹 - 연합을 결성하였다. 이 법령에서는 이 연합을 연맹이라고 한다.
- 1.2. 연맹의 공식적인 소재와 관할권은 본에 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연합 등록(Register of Publicly Acknowledged Associations)에 가입하였다.
- 1.3. 연맹의 행정적인 본부는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이 주재하는 곳에 위치한다.
- 1.4. 연맹은 비영리 조직이다;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없다. 연맹의 재산은 규약에 일치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조직의 재산으로부터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도 없다. 어느 누구도 연맹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용으로부터 또는 높은 회원비용으로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1.5. 연맹은 정치적, 종교적 성질의 토론을 허락하지 않는다.

조항 2. (연맹의 목적)

- 2.1. 연맹은, 급료가 없는 활동을 기초로, 세계 혜택을 누리는 활동에 대한 독일 법에서 규정된 대로, 오로지, 직접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모든 국가 국민들 사이의 국제적인 사고와 이해를 촉진시킨다.
- 2.2. 연맹의 활동 영역은 보고, 문서와 정보 처리 절차, 그리고 서기적이

다. 이 규약에서, ‘보고’는 말로 한 것을 붙잡는 것과 적힌 글을 구체화 하는 것을 뜻하고, ‘정보 처리’는 원문과 원문 관련 자료를 모든 이용 가능한 기술을 이용해서 의사소통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서직’은 비서직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문 기술을 말한다.

2.3. 연맹의 목적은 한 가지 이상의 활동 영역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사람, 전문가가 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이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국제적인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은 연맹이 의도하는 사람들이다. 이 규약에서, 이들을 전문가 집단이라고 부른다.

2.4. 연맹은 활동영역에 관련하여 회원 국가들의 문화와 가치의 상호이해를 자극한다.

2.5. 특히 연맹의 목적은:

- a. 모든 국가에서 연맹 활동 영역의 전문가, 교사, 학생들을 연합하는 것
- b. 위에 언급한 전문가, 교사, 학생들이 직업 생활 동안, 가장 현대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능력과 실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위에 언급한 학생들, 특히 개발 도상국 학생들에게, 적절한 연수 및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것
- c. 이들 전문가 집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합법적이고 타당한 기술과 사업 조사 촉진
- d. 전문가 집단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에 기초한 국가 및 지방 정부, 비국가조직 또는 Unesco와 같은 국제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 협력
- e. 지방 정부, 공공 기관, 민영회사와 협력한 전문적인 업무의 경험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정보를 모으고, 회원들에게 전파하여, 이들이 인적 자원을 최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
- f. 회의를 조직하고 회원들간 개인적 연락을 정함; 활동영역에서 국제 대회를 조직하고, 가능하면 세계 챔피언 대회를 조직함; 활동영역에 대한 연합 연구 추진.

조항 3 (연맹의 구조)

3.1. 연맹의 기구

- a. 총회
- b. 중앙위원회
- c. 이사회
- d. 국제 대회 심사위원
- e. 과학위원회
- f. 감사위원회

3.2. 이 규약에서 국제대회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이라고 한다.

조항 4. (회원 분류)

- 4.1. 연맹의 회원은 국가단체, 개인 회원, 명예 회원 등이다.
- 4.2. 국가 단체는 연맹의 모든 회원 들이다. 국가 단체는 사법이나 공법의 인위적인 법인이어야 한다. 각 국가 단체는 자체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조직할 수 있고, 최소 전문가와 교사들 해당 국가에서 연맹이 활동하는 영역의 최소 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사들을 대표해야 한다. 각 국가는 하나의 국가 단체만 허용된다.
- 4.3. 개별 회원은 개인, 회사, 연합 또는 다른 조직과 의회 보고 서비스 등이 될 수 있고, 연맹의 활동 영역 확장에 개인 회원이 매우 중요하다.
- 4.4. 중앙 위원회의 제안으로 총회는 연맹에 특별한 서비스를 행한 개인에게 명예 회원직을 수여할 수 있다. 명예 회원은 중앙 위원회와 총회의 회의에 참여할 권한이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조항 5 (회원 가입)

- 5.1. 연맹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가망 국가단체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지원하고,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게, 조항 2.3에 언급된 전문가 집단을 최소한 하나 대표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만 국가 단체가 연맹의 완전한 회원이 될 수 있다. 총회의 비준을 따라서 중앙 위원회는 이사회의 제안대로 국가 단체를 가입시킬 권한이 있다.
- 5.2. 한 국가에서 동일한 전문가 집단을 대표하는, 두 개 이상의 조직이,

회원에 지원을 하고 한 개의 국가 단체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는, 중앙 위원회가 이사회의 제안에 근거하고 총회 기준을 따라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가진다.

- 5.3. 연맹은, 아직까지 국가 단체가 없는 국가의 국가 단체의 형성을 장려한다. 결성되기까지 이사회는 개인이나 조직이, 투표권 없이, 연맹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한을 줄 수 있다.
- 5.4. 20.1항에서 언급한 전문적 분야가 형성되었을 때, 여기에 참석하는 전문가 집단의 조직은, 그들의 국가에 국가 단체가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연맹의 개인 회원들이다.
- 5.5. 국가 단체가 아직 없는 국가의 다른 개인 회원들도 조항 5.7의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국가 단체가 존재하는 다른 개인 회원들은 조항 5,8의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 5.6. 전문가 분야에 속하지 않고, 연맹에 가입을 원하는 유망 개인 회원들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지원을 하여야 하고,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들의 회원 가입이 연맹을 위해 중요함을 증명해야 한다.
- 5.7. 총회의 기준에 의거, 중앙 위원회는 이사회의 제안을 기초로, 전문가 분야에 속하지 않고, 국가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개인 회원을 가입시킬 권한이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 국가 단체가 후에 형성이 되면, 이사회는 이미 가입을 한 개인 회원이 계속 회원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계속 회원이 될 수 없으면, 이사회는 개인 회원이 새로 생긴 국가 단체에 들어가도록 권한다. 이사회는 이 문제에 관해 결정해야 할 제안을 중앙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5.8. 중앙 위원회는 이사회의 제안에 기초해서 전문가 부분에 속하지 않고 국가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개인 회원의 가입을 총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가입은 해당 국가 단체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중앙 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결론을 내리면, 총회에 가입을 제안할 권한이 없다.

조항 6 (회원의 포기, 제적)

- 6.1. 회원을 포기하고자 하는 국가 단체와 개인 회원은 서면으로 당해 년

도가 끝나기 3개월 전에 서기관(secretary-treasurer)에게 알려야 한다. 서기관(secretary-treasurer)는 중앙 위원회에 가능한 빨리 알린다. 사직한 회원들은 그들이 등록한 연도에 대한 가입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 6.2. 총회 비준에 의하여, 중앙 위원회는 이사회의 제안을 기초로 회원 비용을 2년 이상 지체한 국가 그룹 또는 개인 회원을 추방할 권한이 있고, 연맹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국가 단체 및 개인 회원을 배제시킬 권한이 있다. 이사회는 회원의 활동이 연맹의 이익과 반하는지 중앙위원회를 확신시켜야 한다. 추방된 회원은 연체 가입비를 지불해야 한다.
- 6.3. 추방 결정은, 제적에 대한 건의와 이유를 담고 있는 편지를 발송한 후 한달 안에, 제적 대상 회원이 서면으로 이를 받아들임을 공지한 후에만 결정할 수 있다. 회원의 서면 인정서가 구두로 해명할 것을 요구하면, 이러한 회원은,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비준하는 총회에 나와야 한다.

조항 7 (대표)

연맹은 법적으로 회장이 대표하고, 회장이 결석시 부회장 또는 서기관(secretary-treasurer)가 대표한다.

조항 8 (총회; 구성과 권한)

- 8.1. 총회는 국가 단체의 대표단, 개인 회원들로 구성된다. 연맹에서 권위가 가장 높다.
- 8.2. 총회는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다.
- 8.3. 총회의 임무는 특히:
 - a. 중앙위원회의 안을 받아서, 회장, 부회장, 서기관(secretary-treasurer) 등을 이사회 회원으로 지명하는 것
 - b. 중앙위원회의 안을 받아서 감사 위원을 지명하는 것
 - c. 중앙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승인한 차기 년도 예산안을 비준하기

- d. 다음 총회 회의가 2년 동안 열리지 않을 경우, 중앙 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제 3년도의 예산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하기
- e. 중앙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승인하고, 감사위원의 보고를 받아들여, 마지막 회의 이후 만기된 기간에 대한 연맹의 회계 비준하기;
- f. 중앙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 국가 단체와 개인 회원의 다음 2년간의 회비를 정하기
- g. 총회의 다음 회의가 2년 안에 열리지 않았을 경우에 중앙위원회가 국가 단체와 개인 회원의 다음 3번째 연도의 회비를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 비용은 전 비용의 5퍼센트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도록 하기
- h. 중앙위원회의 새로운 국가 단체 가입과 개인 회원의 가입, 전문가 부문으로 I 문의 가입 등에 관한 결정 비준하기
- I. 중앙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서 규약 개정하기
- j. 중앙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서 23항에 언급된 세칙 개정하기
- k. 중앙위원회가 제출한 안 결정하기
- l. 연맹 해체하기

조항 9 (총회; 회수, 공지, 절차)

- 9.1. 일반적으로 총회는 연맹의 국제회의 동안에 회담을 갖는다. 어떤 사건에서든 총회는 삼년마다 한번 씩 회의를 한다.
- 9.2. 특별 총회는 연맹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시 소집된다. 연맹 총 회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어야 한다.
- 9.3. 국가 단체와 개인 회원은 일반 우편이나 이메일로 최소 3개월 전에 총회에 초청된다. 총회 초청 시 의제에 대해서도 공고한다.
- 9.4. 각 총회에 대한 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결의안은 말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회장과 서기관(secretary-treasurer) 또는 이들의 대리인들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
- 9.5. 의제에 나온 항목만 결정할 수 있다.

조항 10 (총회; 투표와 결정)

- 10.1. 각 국가 단체는 세 명의 대표단을 지명할 수 있다. 해당 국가 인구가 5백만 명 이상일 경우, 매 500만 명 이상에 대해서, 대표자 한 명이 추가적으로 지명될 수 있다; 최대 대표자는 12명이다. 각 대표자는 한 표씩 가지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대표자만이 투표를 할 수 있다.
- 10.2. 이들 대표자들 외에도 각 국가 단체는 다른 대표자들을 총회에 보낼 수 있지만, 이들은 투표는 할 수 없다.
- 10.3. 각 개인회원은 한 표를 가지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개인 회원만이 투표할 수 있다.
- 10.4. 총회는 참석한 대표자와 개인 회원 수와 상관이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24.3과 25.3에 있는 마땅한 관례대로, 표가 많은 쪽이 결정된다.

조항 11. (중앙 위원회, 구성과 권한)

- 11.1. 중앙 위원회는 단체가 속한 국가의 인구와는 상관이 없이 각 단체 당 한 명씩의 국가 단체의 대표자와 이사회 회원, 그리고 20.3 조항에서 언급한 전문가 부문의 조정자들로 구성된다.
- 11.2. 중앙 위원회의 각 회의를 위해서 국가 단체의 대표자들은 국가 단체가 지명한다. 이사회의 회원은 중앙 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총회가 임명한 회장, 부회장, 서기관, 지명된 심사위원과 과학 위원회의 조정자들이다. 전문 분야 조정자들은 이 분야에서 지명한 사람들이다.
- 11.3. 개인 회원과 손님들은 중앙 위원회 회의에 초청될 수 있다.
- 11.4. 중앙 위원회의 임무는 이사회의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고 필요할 때, 개정 후 필요할 때 이사회의 제안을 승인하는 것이다.
- 11.5. 중앙 위원회의 임무는 특히
 - a. 다음 연도 그리고 두 번째 연도의 예산과 국가 단체 및 개인 회원의 회비를 이사회에서 제출한 대로 잠정적으로 정하기
 - b. 총회가 마지막 회의 후 이년 동안 회의를 가지지 않을 경우, 조항 8.3.g에 나온 마땅한 관례대로 세 번째 연도에 대한 국가단체와 개

- 인 회원 회비를 이사회에서 제출한 대로 정하기
- c. 마지막 회의 이후 기간 동안의 연맹 회계를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 d. 심사위원장 지명과 보조자 지명
 - e. 과학위원회 조정자와 회원 지명하기
 - f. 규례 변경에 관한 이사회 제안, 조항 23에 언급된 세칙의 채택과 변경, 새로운 회원 가입시키기, 감사 위원 임명, 특별 문제 연구와 해결을 위한 위원회 전문분야의 창설
 - g. 국가 단체와 개인 회원에 관한 이사회 제안 결정하기
 - h. 국제 회의에 관한 이사회 제안 결정하기
 - I. 총회에 회장, 부회장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의 이사회 회원 임명에 대한 제안하기 또는 총회가 임기 기간 말까지 열리지 않을 때, 잠정 적으로 이사회 회원들을 임명하기

조항 12 (중앙 위원회; 회수, 공지 그리고 절차)

- 12.1. 중앙위원회 회의는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이 소집한다. 중앙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회의를 갖는다.
- 12.2. 다섯 개 국가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중앙 위원회 특별 회의가 서기관(secretary-treasurer)에 의해서 소집될 수 있다.
- 12.3. 이사회는 중앙 위원회에 초청할 개인 회원과 손님을 결정한다.
- 12.4.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은 국가 단체와 개인 회원과 손님이 중앙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일반 우편이나 이메일로 최소 회의 일자 5개월 전에 알린다. 이러한 공지는 연맹 회원들이 중앙 위원회에 제의를 할 수 있는 마감일이 마감일이 있다.
- 12.5. 최소 회의 3 개월 전에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은 국가 단체, 초청된 개인 회원 그리고 손님에게 일반 우편과 이메일로 이사회 의 안전에 대해서 알린다.
- 12.6. 회의 일 최소 1개월 전에 서기관(sceretary-treasurer)은 일반 우편이나 이메일로 안거에 대한 이사회 의 의견을 나눈다.
- 12.7. 중앙 위원회의 각 회의에 대한 기록을 보존한다. 기록은 회장과 서기관(secretary-tresurer) 또는 이들의 대리인들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

조항 13 (중앙 위원회; 투표와 결정)

- 13.1. 중앙 위원회는 과반수보다 한명 더 많은 회원이 참석하면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
- 13.2. 중앙 위원회는 절대 과반수로 결정한다. 각 회원은 투표권이 하나씩 있다. 표수가 동일한 경우는 회장의 투표가 결정한다.
- 13.3. 초청된 개인 회원과 손님은 토론에 참석할 수 있다. 그들은 조언자 역할을 하고, 투표권은 없다.
- 13.4. 서기관(secretary-treasurer)는 연맹 회원들에게 일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중앙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능한 빨리 알린다.

조항 14 (이사회, 구성과 권한)

- 14.1. 이사회는 연맹의 영구 집행 위원회이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관(secretary-treasurer), 19.6항에 언급된 심사위원 조정자, 그리고 조항 17.1에서 언급된 과학 위원회 조정자로 이루어 진다.
- 14.2. 부회장의 결석 시 회장의 대리인도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이다.
- 14.3. 회장, 부회장, 그리고 서기관은 중앙 위원회의 안을 받아서 총회에서 4년 기간 동안 임명한다. 퇴임 임원은 재선 될 수 있다. 심사위원 조정자와 과학 위원회 조정자들은 이전 이사회 회원들이다.
- 14.4. 총회의 기준을 따라서, 중앙 위원회는 이사회의 안을 받아들여, 부회장의 사망, 은퇴, 질병의 경우에 대리자를 임명한다. 이러한 안은 즉시 모든 중앙 위원회 회원들에게 말해야 하고, 이들이 일반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잠정적인 동의를 할 수 있다. 최후의 동의는 다음 총회에서 해야 한다.
- 14.5. 이사회 임무는
 -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 상황에 기초해서 다음 년도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전략 변화를 이룸으로써 연맹의 활동

이 지 속되도록 하기

- 새로운 국가 단체 형성 촉진
- 모든 행정적인 의무 이행하기
- 중앙 위원회에 가까운 장래의 연맹의 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국제 대회 규칙을 제안하기
- 연맹의 재무적인 사안을 통제하고 중앙 위원회에 연간 예산 제출하기
- 중앙 위원회와 총회에 대한 의제 입안하기.

14.6. 회장, 부회장, 서기관(secretary-treasurer)는 일상의 경영에 책임을 진다.

14.7.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은 이사회의 다른 회원들과 의사를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연맹의 다른 기구들과도 의사소통을 한다. 연맹의 장부 부기를 한다.

14.8. 서기관(secretary-treasurer)는 매년 지난 해 이사회의 활동 보고서를 만들고, 다음 해 예산을 계획한다. 이사회가 동의하면, 서기관(secretary-treasurer)는 보고서와 예산안을 중앙 위원회에 제출한다.

14.9. 심사위원의 조정자는 이사회가 국제 대회에 대한 정보를 알도록 한다. 심사위원 조정자는 국가 단체 또는 개인 회원이 대회에 관해서 가지는 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장의 의견을 이사회에 알린다.

14.10. 과학 위원회 조정자는 이사회가 연맹의 활동 영역 내에 있는 과학적 기술적 발전에 대한 정보를 알도록 하고 국가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 내의 전문가 집단과의 접촉에 대한 정보를 이사회가 알도록 한다.

조항 15 (이사회; 회수와 절차)

15.1. 이사회 회원들은 연맹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이메일로 서로 연락을 유지한다.

15.2. 이사회 회원들은 매년 중앙 위원회 회의 동안에 만난다. 이사회 회원들은 회장이나 부회장 그리고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직접 만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원들의 여행

경비, 호텔 투숙비를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조항 16 (이사회; 투표와 결정)

16.1. 이사회 각 회원은 한 표씩 갖는다.

16.2. 이사회는 만장 일치로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 회원 중 한 명이 부재일 경우, 그리고 나머지 회원들의 표수가 동일한 경우 회장의 투표가 결정한다.

조항 17 (과학 위원)

17.1. 과학 위원은 조정자와 두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정자와 위원들은, 이사회에 제안 받아서 중앙위원회에서 4년 동안 임명한다. 퇴임 위원은 재선될 수 있다.

17.2. 과학 위원의 임무는:

- a. 연맹의 활동 영역 내의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조사한다
- b. 이에 기초해서 문화적 과학적 프로그램을 이사회에 제안한다.
- c. 국가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에 있는 전문가 집단들과 연락을 구 축하고, 이러한 연락 사실을 이사회에 알려서, 이사회가 이들 국가의 국가 단체 형성을 촉진하도록 한다;
- d. 해당 국가 단체의 위원회를 구성에 일치되게 Intersteno-회의 동안에 강의를 구성하고, 다른 Intersteno-회의 동안에 이사회와 일치되게 구성한다.

조항 18 (감사 위원)

18.1. 총회는 세 명의 대표자로 구성된 감사 위원을 지명한다.

18.2. 세 국가 단체가 차례로 이 위원회 대표자들을 임명한다. 로테이션 계획은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이 계획하여, 마지막 총회에서 한 국가 단체가 이 위원회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채택되었으면, 다음에는 한 국가 단체만 올 수 있게 한다.

- 18.3. 서기관(secretary-treasurer)는 감사 위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재무적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18.4. 총회 회의에 앞서서, 감사 위원회는 서기관(secretary-treasurer)의 재무 문서를 검사한다. 총회 회의에서 감사 위원회는 결과를 보고한다.

조항 19 (심사위원)

- 19.1. 연맹의 활동 영역 내에 있는 국제 대회를 조직할 수 있다. 모든 회원들은 각자 자기 국가에서 가능한 많은 참가자들이 있도록 노력한다. 참가자들은 조직 위원회에서 정하는 참가비를 내야 하고, 이사회 의 제안으로 중앙 위원회가 결정한 대회 규칙을 따라야 한다. 심사 위원은 참가자들의 결과를 판정하고 이 결과를 대회 마지막에 발표한다.
- 19.2. 심사위원의 임무는 더 나아가서:
- a. 국제 대회를 조직하고 대회 동안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대처하기
 - b. 다음 회의 조직의 필요와 기술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사회에 대회 규칙의 개선을 제안하기
 - c. 이사회에 국가 단체와 개인 회원이 제안하는 대회 규칙에 대해서 조언하기
- 19.3. 심사위원은 최소 두명의 심사위원장으로 구성된다. 각 심사위원장은 연맹의 활동 영역과 연관된 많은 대회들을 다루고, 보조자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과 보조자들은 심사위원이다.
- 19.4. 각 국제 대회동안 심사위원은 보조자의 도움을 받는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이고 심사위원은 아니다.
- 19.5. 심사위원장과 보조자들은 중앙 위원회가 이사회의 제안을 받아서 4년 기간동안 임명한다. 퇴임 심사위원은 재선될 수 있다.
- 19.6. 심사위원장이 보조자 중 한 명을 심사위원 조정자로 임명할 수 있고, 조정자는 이사회 회원이 된다. 심사위원장은 서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심사 위원 조정자가 이사회에서 심사위원들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항 20 (전문적 분야)

- 20.1. 연맹의 틀 안에서, 전문 분야가 형성될 수 있다. 전문 분야는 특정 전문가 집단의 협력 집단이다. 특정 전문가 집단의 조직으로 구성되고 다섯 개의 국가로부터 온 조직이 참여해야만 형성될 수 있다.
- 20.2. 총회 비준에 따라서, 중앙 위원회는 이사회의 제안을 받아 전문가 부문 구성에 동의할 권한이 있다.
- 20.3. 전문가 부문은 재량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직될 수 있고, 연맹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목적을 가진다. 중앙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는 조정자를 임명한다.
- 20.4. 전문가 부문에 속하는 조직들은, 연맹의 개별 회원이다.
- 20.5. 전문가 부문에 속하는 조직들이 회원권을 사임하거나 추방될 때, 그 결과로, 다섯 개 국가로부터의 조직들은 더 이상 전문가 부문에 속하지 않고, 이 부문은 이 규약에 근거해서 존재가 중단된다. 서기관(secretary-treasurer)는 연맹의 모든 회원에게 즉시 이 상황에 대해서 알린다.

조항 21 (Intersteno-회의와 다른 Intersteno-회의)

- 21.1. 가능하면, 2년 또는 3년마다 국제 Intersteno-회의가 열린다. 매 회의에서 국제 대회 또는 다른 국제적 활동들이 조직되고 강의를 할 수 있다.
- 21.2. Intersteno-회의는 국가 단체 중 하나가 조직하고, 개별 회원과 협력하여 조직된다.
- 21.3. 국제적인 Intersteno-회의를 조직하는 국가 단체는 조직 위원회를 세우고, 각 회의의 장을 임명한다.
- 21.4. 조직 위원회는 이사회와 회의 계획을 미리 상의한다. 계획은 중앙 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급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21.5. 재무적으로 조직 위원회는 회의 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만 책임을 진다.

- 21.6. 연맹은 조직 위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21.7. 조직된 Intersteno-회의가 없으면, 국가 단체와/또는 개별 회원에 의해 작은 규모의 국제 회의를 조직할 수 있다. 국제 Intersteno-회의로 인식되기 위해서, 이사회의 제안을 받아 중앙 위원회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 위원회가 이사회의 제안을 받아서, 재무적인 설계, 회의 동안 국제 대회가 열릴 것인가, 회의동안 총회 회의가 열릴 것인가 등을 포함함 국제 Intersteno-회의의 계획에 대한 결정을 한다.
- 21.8. Intersteno-회의는 또한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조직될 수 있다. 이러한 Intersteno-회의는 조항 21.7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항 22 (회계 기간; 재무적 자산; 부채)

- 22.1. 연맹은 1월 1일에서 시작하여 12월 31일 마감하는 회계 기간을 갖는다.
- 22.2. 연맹의 재무적 자산은
- a. 회원의 가입비
 - b. 다른 회비 및 연맹 발행물의 판매 이익
 - c. 지원금, 기부금, 유산
- 22.3. 각 국가 단체는 이들이 권리를 준 대표자에 대해서 연중 회비를 지불한다
- 22.4. 총회는 중앙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국가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회비를 정할 권리가 있다.
- 22.5. 개별 회원은 중앙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서 총회가 정한 연회비를 지불한다. 이 비용은 개별 회원에 따라 다르다.
- 22.6. 명예 회원은 회비를 내지 않는다.
- 22.7. 연맹은 자본에 대해서만 재무적인 책임을 갖는다. 국가 단체와 개별 회원은 재무적인 책임이 없다.

조항 23 (세칙, 채택과 변경)

- 23.1. 이사회는 세칙을 만들어 규약을 구체화할 수 있다. 세칙 조항들은

규약에 반할 수 없다.

- 23.2. 세칙은 개정 후, 중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앙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총회가 채택한 후에는 연맹의 모든 회원들에게 구속력을 지닌다.
- 23.3. 채택된 후 세칙은 중앙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 23.4. 세칙의 채택을 위해서, 그리고 세칙 개정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참석한 대표자와 개별 회원 수에 상관없이 총회에서 다수결 투표를 한다. 세칙 채택과 개정을 위한 총회 회의 초청 글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조항 24 (규약의 변경)

- 24.1. 규약은 중앙 위원회의 제안으로, 일반 총회 또는 이사회 또는 다섯 국가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되는 특별 총회에서 개정된다.
- 24.2. 이러한 총회 초청 글에서 규약 개정안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 24.3. 규약 개정을 위해서 국가 단체와 개별 회원의 최소 4분의 3이 참석한 총회 회의에서 모든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가 요구된다.
- 24.4. 이런 정족수가 형성되면, 새로운 총회를 최대한 빨리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 단체와 개별 회원의 수에 관계없이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한다. 이는 총회가 규약의 개정을 결정하는 회의 초청 시에 언급되어야 한다.
- 24.5. 규약의 변경은 독일 서기에 의해 집행된 후 효력을 발휘한다.

Art. 25 (해체)

- 25.1. 연맹은 기술된 목적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해체된다.
- 25.2. 이사회와 중앙 위원회의 제안으로 특별 총회 회의를 소집하여서 연맹의 해체를 결정한다.
- 25.3. 연맹 해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국가 단체 및 개별 회원의 4분의 3이 참석한 회의에서 3분의 2 과반수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족

수가 형성되지 않으면, 새로운 총회를 최대한 빨리 소집하고, 이 회의에서 국가 단체와 개별 회원의 수에 상관없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는 총회가 해체를 결정하는 회의의 초청 문구에 언급되어야 한다.

25.4. 연맹은 이사회 회원과 청산 위원들에 의해서 해체된다.

25.5. 모든 비용보다 청산 비용 또는 예치 목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돈을 정리하고, 순 자산은 국제 적십자 위원회에 지불한다.

조항 26 (마지막 항)

국가 단체와 개별 회원은 현재 규약에 나오지 않은 모든 경우는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이러한 결정은 총회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처음 Intersteno-회의는 1887년 런던에서 열렸다. 이 규약은 로마에서 채택되었고, 1995년 7월 20일 암스테르담에서 채택된 규약을 대체한 것이다.

CONSTITUTION (les Statuts; die Statuten) of INTERSTENO

Art. 1 (Name, registered office and nature of the association)

1.1. Under the name of INTERSTENO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 - an incorporated association has been formed. In this Constitution this association is further called: the Federation.

1.2. The official seat and jurisdiction of the Federation is in Bonn. It is entered in the Register of Publicly Acknowledged Associations.

1.3. The administrative headquarters of the Federation shall be situated at the residence of the secretary-treasurer.

1.4. The Federation is a disinterested organization; it does not have profit-making goals. The Federation's means may be used only for aim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No financial gain from the organization's means accrues to its members. No person may benefit from expenditure that is outside the Federation's aims, or from excessively high fees.

1.5. The Federation does not allow any discussion of a political or religious nature.

Art. 2 (Aims of the Federation)

2.1. The Federation pursues, on the basis of unsalaried activity, exclusively and directly non-profit-making aims, as defined by the section of German Law on activities enjoying tax privileges. It promotes international thinking and understanding among people of all nations.

2.2. The domains of activity of the Federation are reporting, text- and information processing and secretariat. In this Constitution "reporting" means the capturing of the spoken word and the elaborating of the written word, "information processing" the processing of text and text related data for communication purposes with all technical means available, and "secretariat" the professional skills needed by all persons having a secretarial function.

2.3. The aims of the Federation are to provide an international platform for all people who work as professionals in, are interested in or study to become professionals in one or more of the domains of its activity. They are the persons for which the Federation is meant. In this Constitution they are called: the professional groups.

2.4. The Federation shall stimulate mutual understanding of the cultures and values in the countries of its members concerning its domains of activity.

2.5. The aims of the Federation are in particular:

- a. to associate the professionals, teachers and students in its domains of activity in all countries;
- b. to encourage the maintenance of high standards of competence and performance of the above mentioned professionals and teachers

during their professional life by using the most modern technical means and to encourage appropriate training and educational facilities and programmes for the above mentioned student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c. to promote the use of new technologies and lawful and proper technical and business research, which can help to enhance services offered by its professional groups;

d. to co-operate wi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international public and private agencies, such as Unesco, on the basis of specific programmes for its professional groups;

e. to centralize and to spread information of a professional nature, including information about the experience of professionals working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among its members in order to enable them to promote the best possible use of human resources;

f. to organize meetings and to establish personal contacts among its members;

g. to organize international contests in its domains of activity, if possible with world championships;

h. to advance joint studies concerning its domains of activity;

i. to defend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of the professional groups, referred to in

article 2.3.

Art. 3 (Structure of the Federation)

3.1. The bodies of the Federation are:

a. the General Assembly

b. the Central Committee;

c. the Board;

- d. the Jury for the International Contests
- e. the Scientific Committee;
- f. the Auditing Committee.

3.2. In this Constitution the Jury for the International Contests is called: the Jury.

Art. 4 (Categories of members)

4.1. Members of the Federation are the National Groups, individual members and honorary members.

4.2. National Groups are full members of the Federation. A National Group has to be an artificial person in private or public law. Each National Group may organize itself at its own discretion and should at least represent professionals and teachers in one of the domains of activity of the Federation in the country in question. Each country is allowed only one National Group.

4.3. Individual members can be private persons, companies, associations or other organizations and parliamentary reporting services , whose membership is of importance for the enlargement of the working field of the Federation.

4.4. At the suggestion of the Central Committee the General Assembly ma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member on any private person who has rendered special services to the Federation. Honorary members are entitled to attend the meetings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the General Assembly, but they are not entitled to vote.

Art. 5 (Admission of members)

5.1. A prospective National Group, wishing to join the Federation, has to apply inwriting to the Board and to prove, to the satisfaction of the Board, that it represents at least one of the professional groups, referred to in art. 2.3. Only in such a case can a National Group become a full member of the Federation. Subject to ratification by the General Assembly, the Central Committee is on the proposal of the Board authorized to admit National Groups.

5.2. When two or more organizations in a country, representing the same professional group, apply for membership and seem not able to form one National Group, the Central Committee, on the proposal of the Board and subject to ratification by the General Assembly, is authorized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best possible way.

5.3. The Federation will promote the formation of National Groups in those countries where, as yet, none exists. Pending their formation the Board can authorize private persons or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f the Federation, without being entitled to vote.

5.4. When a professional section, referred to in article 20.1, has been formed, the organizations of the professional group in question taking part in it, are individual members of the Federation, irrespective of the existence of a National Group in their countries.

5.5. Other individual membersfrom countries not yet having a National Group can be admitted under the conditions of art. 5.7. Other individual members from countries where a National Group

already exists, can be admitted under the conditions of art. 5.8.

5.6. A prospective individual member, who does not belong to a professional section and wishes to join the Federation, has to apply in writing to the Board and to prove, to the satisfaction of the Board, that his or her membership can be of importance for the Federation.

5.7. Subject to ratification by the General Assembly the Central Committee is on the proposal of the Board authorised to admit individual members, not belonging to a professional section, from countries where no National Group exists. When in such a country a National Group is formed afterwards, the Board has to judge if the individual members already admitted can continue their membership. If the membership cannot be continued, the Board shall recommend the individual members to join the new National Group. The Board shall present a proposal concerning this matter to the Central Committee, that has to decide.

5.8. The Central Committee is on the proposal of the Board authorized to propose to the General Assembly the admission of individual members, not belonging to a professional section, from countries where a National Group exists. Such an admission may not harm the interests of the National Group in question. If the Central Committee concludes that this is the case, it is not authorized to propose the admission to the General Assembly.

Art. 6 (Resignation and expulsion of members)

6.1. National Groups and an individual members, wishing to resign their membership, will have to give notice in writing to the secretary-treasurer three months before the end of the current

year. The secretary-treasurer informs the Central Committee as soon as possible. Members who have resigned shall remain liable to pay the subscription fee owing for the year in which they resigned.

6.2. Subject to ratification by the General Assembly, the Central Committee is on the proposal of the Board authorized to expel any National Group or individual member who has been in arrears in payment of their membership fee for more than two years and to exclude a National Group or an individual member whose actions are contrary to the interests of the Federation. The Board has to convince the Central Committee that a member's actions are contrary to the interests of the Federation. Expelled members shall remain liable to pay their arrears of subscription.

6.3. A decision to expel may be taken only after the member liable to expulsion has been invited to make known his or her submissions in writing within a month of the dispatch of a registered letter, which contains the proposal and the reasons for expulsion. If the member's written submissions include a request to give an oral explanation, such member must appear before the General Assembly that has to ratify the deci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Art. 7 (Representation)

The Federation is represented legally by the president and in the absence of the president by the vice-president or the secretary-treasurer.

Art. 8 (General Assembly; composition and powers)

8.1. The General Assembly consists of the delegates of the National Groups and the individual members. It is the highest authority of the Federation.

8.2. The General Assembly shall exercise the powers vested in it by statute or the Constitution.

8.3. The task of the General Assembly is in particular:

a. to nominate, on the proposal of the Central Committee, the president, the vice-president and the secretary-treasurer as members of the Board;

b. to nominate, on the proposal of the Central Committee, the Auditing Committee;

c. to ratify the budget for the next two years provisionally approved by the Central Committee;

d. to authorize the Central Committee to decide provisionally on the budget for the next third year in case the next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cannot take place within two years;

e. to ratify the accounts of the Federation for the period expired since its last meeting, as provisionally approved by the Central Committee, having taken note of the report of the Auditing Committee;

f. to fix, on the proposal of the Central Committee, the annual membership fees for National Groups and individual members for the next two years;

g. to authorize the Central Committee to decide on the fees for National Groups and individual members for the next third year in case the next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cannot take place within two years, provided that these fees will not exceed the fees for the previous year with more than five per cent;

h. to ratify the decisions of the Central Committee regarding the admission of new

National Groups and individual members and of professional sections;

i. to amend, on the proposal of the Central Committee, the Constitution;

j. to approve and to amend, on the proposal of the Central Committee, the By-Laws referred to in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k. to decide on any other proposal submitted by the Central Committee;

l. to dissolve the Federation;

Art. 9 (General Assembly; frequency, notice and procedures)

9.1. As a rule the General Assembly meets during the international congresses of the Federation. In any event the General Assembly meets once every three years.

9.2. An extraordinary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be called whenever required in the interests of the Federation. It shall be called on the requisition of half of the full members of the Federation.

9.3. The National Groups and the individual members are to be invited to a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by ordinary post or by e-mail at least three months in advance. The invitation shall include an announcement of the agenda.

9.4. A record is to be kept of eac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re to be recorded verbatim. The record is to be signed by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treasurer or their representatives.

9.5. Decisions can only be made on items appearing on the agenda.

Art. 10 (General Assembly; voting and decisions)

10.1. Each National Group is entitled to appoint three delegates. If the country in question has more than five million inhabitants one extra delegate for every five million inhabitants more can be appointed; the maximum being twelve delegates. Each delegate has one vote. Only delegates attending the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can vote.

10.2. Besides these delegates each National Group may send other representatives to the General Assembly, but these are not entitled to vote.

10.3. Each individual member has one vote. Only individual members attending the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can vote.

10.4. The General Assembly is entitled to make decisions irrespective of the number of delegates and individual members present. With due observance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24.3 and article 25.3, a majority of votes is decisive.

Art. 11 (Central Committee; composition and powers)

11.1. The Central Committee consists of the delegates of the National Groups, one from each group, regardless the number of inhabitants of the country of the group, the members of the Board and the co-ordinators of professional sections, referred to in article 20.3.

11.2. For each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the delegates of the National Groups are appointed by the National Groups. The members of the Board are the president, the vice-president and the secretary-treasurer nominated by the General Assembly prior to the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the nominated co-ordinators of the Jury and of the Scientific Committee. The co-ordinators of professional sections are the persons nominated by these sections.

11.3. Individual members and guests can be invited to the meetings of the Central Committee.

11.4. The task of the Central Committee is to judge the policy of the Board and to approve, when necessary after amending, the proposals of the Board.

11.5. The task of the Central Committee is in particular:

- a. to decide provisionally on the budget and the fees for National Groups and individual members, as presented by the Board, for the next and second year;
- b. to decide on the fees for National Groups and individual members for the third year, as presented by the Board, in case the General Assembly does not meet in the two years after its last meeting, with due observance of the provision of article 8.3.g;
- c. to decide provisionally on the accounts of the Federation covering the period since its last meeting;
- d. to nominate the jury presidents and, eventually, their assistants;
- e. to nominate the co-ordinator and the members of the Scientific Committee;
- f. to decide on the proposals of the Board regarding the alter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adoption and alteration of the By-Laws, referred to in article

23, the admission of new members, the nomination of the Auditing Committee, the creation of committees for studying or working out special problems and the creation of professional sections;

g. to decide on the proposals of the Board regarding proposals of National Groups and individual members;

h. to decide on the proposals of the Board, regarding the regulations for the international contests;

i.o present proposals to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ent, the vice-president and the secretary-treasurer as members of the Board or to appoint provisionally these members of the Board if no General Assembly is held before the end of their term of office.

Art. 12 (Central Committee; frequency, notice and procedures)

12.1. The Central Committee will be called to a meeting by the secretary-treasurer. The Central Committee will meet at least once every year.

12.2. At the request of five National Groups an extraordinary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shall be called by the secretary-treasurer.

12.3. The Board decides which individual members and guests will be invited to attend a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12.4. The secretary-treasurer calls the National Groups and the

individual members and guests to be invited to a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by ordinary post or e-mail at least five months before the date of the meeting. In this notification mention is made of the closing date on which members of the Federation can submit proposals to the Central Committee.

12.5. At least three months before the date of the meeting the secretary-treasurer informs the National Groups and the invited individual members And guests by ordinary post or e-mail about the proposals of the Board.

12.6. At least one month before the date of the meeting the secretary-treasurer communicates the opinion of the Board about the proposals of members by ordinary post or e-mail.

12.7. A record is to be kept of each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The record is to be signed by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treasurer or their representatives.

Art. 13 (Central Committee; voting and decisions)

13.1. The Central Committee is entitled to make decisions if half of their members plus one is present.

13.2. The Central Committee decides with an absolute majority of votes. Each member has one vote. In case of equality of votes the president's vote is decisive.

13.3. Invited individual members and guests can take part in the discussion. They have an advisory function, but they are not entitled to vote.

13.4. The secretary-treasurer informs the members of the Federation, by ordinary post or e-mail, about the decisions taken by the Central Committee as soon as possible.

Art. 14 (The Board; composition and powers)

14.1. The Board is the permanent executive committee of the Federation. The Board consists of the president, the vice-president, the secretary-treasurer, the co-ordinator of the Jury, referred to in article 19.6, and the co-ordinator of the Scientific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17.1.

14.2. In case of absence the vice-president is the substitute for the president as well as for the secretary-treasurer.

14.3. The president, the vice-president and the secretary-treasurer are nomina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proposal of the Central Committee for a period of four years. These outgoing officers are eligible for re-election. The co-ordinator of the Jury and the co-ordinator of the Scientific Committee are ex officio members of the Board.

14.4. Subject to ratification by the General Assembly, the Central Committee is, on the proposal of the Board, authorized to appoint a substitute in case of death, retirement or illness of the vice-president. Such a proposal has to be communicated immediately to all members of the Central Committee, who can give their provisional consent by ordinary post or e-mail. Final consent has to be given in the next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14.5. The task of the Board is:

- to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Federation's activities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creating on the basis of that situation and of foreseeable economic, sociological and technological changes a strategy for the years to come;
- to promote the formation of new National Groups;
- to carry out all administrative duties;
- to propose to the Central Committee the programme of the Federation's activities for the near future and the regulations for the international contests;
- to control the financial affairs of the Federation and to present an annual budget to the Central Committee;
- to draw up the agenda's for the Central Committee and the General Assembly.

14.6. The president, the vice-president and the secretary-treasurer are charged with the day-to-day management.

14.7. The secretary-treasurer takes care of the communication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 Board as well as with the other bodies of the Federation. He does the bookkeeping of the Federation.

14.8. The secretary-treasurer draws up an annual report about the activities of the Board in the past year and a budget for the next year. After the Board has given its consent, the secretary-treasurer presents the report and the budget to the Central Committee.

14.9. The co-ordinator of the Jury keeps the Board informed about new development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contests. The co-ordinator of the Jury informs the Board about the opinion of the jury presidents about proposals from National Groups or

individual members regarding these contests.

14.10. The co-ordinator of the Scientific Committee keeps the Board informed abou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the domains of activity of the Federation and about its contacts with professional groups in countries where no National Group exists.

Art. 15 (The Board; frequency and procedures)

15.1. The members of the Board keep in touch with each other by e-mail about all subjects of importance for the Federation.

15.2. All members of the Board shall meet every year during the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During the year members of the Board can meet in person when this is necessary in the opinion of the president, the vice-president and the secretary-treasurer. The Board seeks to keep the travelling and hotel expenses of its members as low as possible.

Art. 16 (The Board; voting and decisions)

16.1. Each member of the Board has one vote.

16.2. The Board aims at unanimity in its decisions. In case of abstention of one of its members and equality of votes of the other members the president's vote is decisive.

Art. 17 (The Scientific Committee)

17.1. The Scientific Committee is composed of a co-ordinator and two members. The co-ordinator and the members are nominated

by the Central Committee on the proposal of the Board for a period of four years. Outgoing officers are eligible for re-election.

17.2. Its task is:

- a. to explor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the domains of activity of the Federation;
- b. to propose on that basis cultural and scientific programmes to the Board;
- c. to establish contacts with professional groups in countries where no National Group exists, to inform the Board about these contacts in order to enable the Board to promote the formation of National Groups in these countries;
- d. to organize lectures during Intersteno-congresses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Group in question, or during other Intersteno-meetings in accordance with the Board.

Art. 18 (The Auditing Committee)

18.1. The General Assembly nominates an Auditing Committee, consisting of three delegates.

18.2. By rotation three National Groups appoint a delegate each for this committee. The rotation scheme is drawn up by the secretary-treasurer in such a way, that only one National Group can be next in line if it was chosen to appoint a delegate for this committee in the last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18.3. The secretary-treasurer is obliged to provide the Auditing Committee with all financial documents needed for its work.

18.4. Prior to the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the Auditing Committee scrutinizes the financial documents of the

secretary-treasurer. In the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the Auditing Committee reports on its findings.

Art. 19 (The Jury)

19.1. International contests in the domains of activity of the Federation can be organized. All members shall try to achieve that as many participants from their countries as possible enter the competitions. Participants have to pay the participation fee, fixed by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have to comply with the contest regulations, decided on by the Central Committee on the proposal of the Board. The Jury decides on the results of the participants and announces these results at the end of the contests.

19.2. The task of the Jury is furthermore:

- a. to organize the international contests and to deal with all problems arising during the contests;
- b. to propose to the Board upgrades of the regulations for the compet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the organization of the next congress and with the developments of techniques and technologies;
- c. to advise the Board about proposals of National Groups and individual members regarding the regulations for the competitions.

19.3. The Jury consists of at least two jury presidents. Each jury president deals with a number of contests, connected with one of the domains of activity of the Federation, and can have on request one assistant. The jury presidents and their assistants are the members of the Jury.

19.4. During each international contest the Jury is assisted by helpers. These are volunteers and no members of the Jury.

19.5. The jury presidents and their assistants are nominated by the Central Committee on the proposal of the Board for a period of four years. Outgoing officers are eligible for re-election.

19.6. It is up to the jury presidents to nominate one of them as co-ordinator of the Jury, who will be member of the Board. The jury presidents keep in close contact with each other to assure that the one who is co-ordinator of the Jury can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Jury on the Board.

Art. 20 (Professional sections)

20.1.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ederation professional sections can be formed. A professional section is a fellowship of a specific professional group. It consists of organizations of the specific professional group in question and can only be formed if organizations from five different countries take part in it.

20.2. Subject to ratification by the General Assembly, the Central Committee is on the proposal of the Board authorized to agree with the formation of a professional section.

20.3. A professional section may organize itself at its own discretion, provided that its aims are not contrary to the aims of the Federation. It appoints a co-ordinator, who takes part in the work of the Central Committee.

20.4. Organizations belonging to a professional section, are individual members of the Federation.

20.5. When organizations belonging to a professional section resign

their membership or are expelled and when, as a consequence, organizations from five different countries no longer belong to the professional section in question, this section will cease to exist on the basis of this Constitution. The secretary-treasurer shall inform all members of the Federation immediately about this circumstance.

Art. 21 (The Intersteno-congresses and other Intersteno-meetings)

21.1. If possible, every two or three years an international Intersteno-congress will be held. At every congress international contests or other international activities can be organized and lectures conducted.

21.2. The Intersteno-congresses are organized by one of the National Groups, eventually in co-operation with individual members.

21.3. A National Group, organizing an international Intersteno-congress, sets up an organizing committee and appoints a chairperson for the congress.

21.4. The organizing committee consults the Board beforehand about its plan for the congress. The plan has to be approved by the Central Committee or, in case of urgency, by the Board.

21.5. Financially the organizing committee is only responsible for the costs directly linked to the organization of the congress.

21.6. The Federation can give financial support to the organizing committee.

21.7. If no Intersteno-congress can be organized, an international

meeting on a smaller scale can be organized by National Groups and/or individual members.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n international Intersteno-meeting, they need the approval of the Central Committee on the proposal of the Board. The Central Committee decides, on the proposal of the Board, on the plan for such an international Intersteno-meeting, including the financial set-up, the question if international contests can be held during that meeting and if a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can take place during that meeting.

21.8. Intersteno-meetings can also be organized in the interval of two or three years between Intersteno-congresses. For these Intersteno-meetings the rules of article 21.7 are applicable.

Art. 22 (Accounting period; financial means; liability)

22.1. The Federation shall have an annual accounting period commencing on January 1st and closing on December 31st.

22.2. The financial means of the Federation are:

- a. subscription fees of members;
- b. profits of other subscriptions and profits of sale of publications of the Federation;
- c. subsidies, donations and legacies.

22.3. Each National Group pays an annual fee for each delegate to whom it is entitled.

22.4. The General Assembly has the right to fix a minimum fee for the National Groups on the proposal of the Central Committee.

22.5. Individual members pay an annual fee fix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proposal of the Central Committee. These fees can be different for different individual members.

22.6. Honorary members do not pay a membership fee.

22.7. For financial obligations the Federation is liable only with its capital. The National Groups and individual members are not personally liable.

Art. 23 (By-Laws, adoption and alterations)

23.1. The Board may draw up By-Laws to give detailed effect to this Constitution. The provisions of the By-Laws cannot be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23.2. The By-Laws have to be approved by the Central Committee, eventually after amending, and shall be binding on all members of the Federation after being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proposal of the Central Committee.

23.3. After being adopted the By-Laws can be amend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proposal of the Central Committee.

23.4. For the adoption of the By-Laws and for the adoption of a proposal to amend the By Laws a majority of votes in the General Assembly is decisive, irrespective the number of delegates and individual members present. In the invitation for the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in which the By-Laws have to be adopted or amended, the text of the articles shall be stated in full.

Art. 24 (Alteration of the Constitution)

24.1. The Constitution can be amended on the proposal of the Central Committee by a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held during a congress or by an extraordinary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convoked by request of the Board or of five National Groups.

24.2. In the invitation for such a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the text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hall be stated in full.

24.3. For amending the Constitution a majority of two-thirds of the votes of all members is required in a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in which at least three-quarters of the National Groups and the individual members is represented.

24.4. If no such quorum is formed, a new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called as soon as possible. That meeting may validly transact its busines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National Groups and individual members represented. This has to be mentioned in the invitation for the meeting in which the General Assembly has to decide about the alterations of the Constitution.

24.5. Alterations of the Constitution shall take effect only after they have been executed by a German notary.

Art. 25 (Dissolution)

25.1. The Federation is wound up if it no longer pursues its stated aims.

25.2. An extraordinary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called to decide on a proposal of the Board, seconded by the

Central Committee, to dissolve the Federation.

25.3. For a decision to dissolve the Federation a majority of two-thirds of the votes of all members is required in a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in which at least three-quarters of the National Groups and the individual members is represented. If no such quorum is formed, a new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called as soon as possible and such meeting may validly transact its business regardless the number of National Groups and individual members represented. This has to be mentioned in the invitation for the meeting in which the General Assembly has to decide on the dissolution.

25.4. The Federation shall be wound up by the members of the Board then in office, acting as a liquidating committee.

25.5. After all liabilities, expenses and the costs of liquidation have been settled, or all monies required for the purpose deposited, the net assets shall be paid over to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rt. 26 (Final article)

The National Groups and individual members submit to the Central Committee's rulings in all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present Constitution. These rulings are subject to ratification by the General Assembly.

The first Intersteno-congress was held in 1887 in London. This version of the Constitution is adopted in Rome on and replaces the version adopted in Amsterdam on July 20 1995. It was executed by a German notary on

제12회 속기학술세미나 - 내 마음의 자유

김 종 명

2004년 8월27일 새벽

을지훈련으로 인해 밤샘 근무를 하고 제주 회원들과 함께 안면도로 향했다. 잠 한 숨 못잔 데다 초행길이라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취미가 취미인지라 대한민국의 어느 곳이든 좋은 풍경만 있다면 달려가는 나이지만 이번 여행은 그저 부담스럽기만 할 따름이다.

여섯 시간에 걸친 긴 여정, 묻고 또 물어서 다섯 시가 다 되어서야 오션파크에 도착했다. 오션파크가 위치한 곳은 일몰로 유명한 바로 꽃지해수욕장 옆이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도착하자마자 반기는 반가운 얼굴들, 그간의 피로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입가에는 그저 미소만 머물 뿐이다. 시간은 여지없이 흘러 주제발표 시간, “의회와 법원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병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님의 강의를 이어졌다. 주제발표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잠시 바다를 보기 위해 해안 쪽으로 눈을 돌렸다. 늦여름의 해는 붉은 빛을 자랑하며 구름 뒤로 숨어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다. 한동안 가만히 앉아 넋을 놓고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역시 세미나의 묘미는 2부 행사가 아니던가.

하나로 뭉친 회원님들의 모습을 보니 덩달아 흥이 나고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러나 밤샘의 여과일까, 아니면 여섯 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달려온 탓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2004년8월28일

아침은 거른 채 베란다에 앉아 담배 한 대에 불을 붙였다. 몸은 여전히 무겁다. 하지만 바닷가의 맑은 공기만은 시원하기 그지없다. 강의시간이 되어 세미나실로 향했고 그렇게 이번 제12회 속기학술세미나의 일정을 마쳤다.

하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았던가? 강의를 마치기 무섭게 선배들께 먼저 작별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다. 그토록 갈망하던 신두리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므로
내가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있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더라도
나는 존재한다.

존재함은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이다.

- 하늘의 세상을 보는 마음 중에서(<http://c.c.co.kr>) -

위의 시는 사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신두리 여행 때 한 회원이 쓴 글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행하지 못한 아쉬움에 더하여 그토록 나로 하여금 신두리를 갈망하도록 만든 시이다.

8월의 끝이지만 빛은 왜 이리도 뜨거운지 조금만 걸어도 몸에서 진땀이 났다. 신두리는 약 1만 5천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국내 최대의 사구이다. 길이 3킬로, 폭이 200미터나 되는 드넓은 모래사장에 사람이라곤 나 혼자다. 마치 아무도 없는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다. 나는 주섬 주섬 카메라와 필름을 챙겨들고 걷기 시작했다.

모래사장 주변에는 낮은 풀들이 자라고 있었다. 간혹 보이는 갈매기는 더위도 잊은 채 낮은 비행을 하고 주변의 풀밭에는 소들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더러 보이는 철조망들은 그 용도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단지 주변 풍경에 어울려 하나의 눈요기거리로만 보였다.

나는 더위도 잊은 채 구석구석 다니며 아름다운 풍경들을 필름에 담았다. 두 시간 가량 걸었을까, 드디어 모래사장은 보이지 않고 시멘트 철골로 만든 독이 보이기 시작했다. 돌아갈 길은 아득히 멀기만 하다. 차가 있는 곳까지는 적어도 30분은 걸릴 것 같다. 무더위 속에 힘이 빠진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다시 나를 돌아본다.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데 큰 짐이 되는 경우가 있다.

더 이상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늘은 붉어지고 이내 시야는 점점 좁아진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세미나 참석이었지만 신두리 모래사장에 눈을 빼앗긴 나로서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저 몇몇 분들의 얼굴들만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뿐.....

(경상북도의회)

글쓴이 : 경상북도의회 김 종 명

역동적이고 사랑받는 경기도의회

임 속 영



1. 경기도의회 연혁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계속되는 정치의 불안정과 6·25 전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1952년 5월 10일 최초의 시·도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나 6·25 전쟁의 영향으로 경기도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강원도, 전라북도 4개·군은 실시되지 못하였다.

초대 경기도의회는 1965년 8월 13일 19개 시·군 45개 선거구에서 45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9월 3일 개원하였다. 제2대 의회는 1960년 12월 12일 19개 시·군 46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12월 22일 개원하였으나 1961년 5월 16일 발표된 정부 포고령 제4호에 의해 해산되었다.

제2대 의회가 해산된 지 만 30년이 지나서야 제3대 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991년 6월 20일 36개 시·군 117개 선거구에서 117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7월 8일 개원하였다.

제4대 의회는 1995년 6월 27일 31개 시·군 123개 선거구에서 지역구의원 123명이 선출되고 비례대표 13명을 포함한 총 136명으로 1995년 7월 8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하였다.

제5대 의회는 1998년 6월 4일 31개 시·군 88개 선거구에서 지역구의원 88명이 선출되고 비례대표 9명을 포함한 97명으로 구성되어 1998년 7월 9일 개원하여 2002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하였다.

2. 국제교류협력

경기도의회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발전하는 선진의회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미국 유타주('94. 08. 17), 중국 요녕성 및 광둥성 인민대표대회('94. 08. 20), 일본 가나가와현의회('04. 08. 24)와 친선의원연맹을 결성하고 스페인 까탈루냐주의회('99. 04. 07)와는 협력공동문서 조인, 호주 퀸스랜드주의회('02. 04. 05)와는 상호협력 합의를 통해 세계 속의 경기도의회로 도약해 나가고 있다.

3. 의회사무처

○ 6대 의회 의원

94개 지역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한 지역의원과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한 10명의 비례대표의원을 합해 10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의장/부의장

의장 1인, 부의장 2인

○ 교섭단체

한나라당, 열린의정

○ 위원회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분야별로 9개의 상임위원회(의회운영, 기획, 경제투자, 자치행정, 교육, 문화공보, 농림수산, 보사환경, 건설교통)가 구성되어 있고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예산결산, 윤리, 지방자치발전, 평택항공권광역개발추진, 남북교류, 여성, 접경지역발전추진, 행정수도이전반대)가 있다. 또한 주요 행정업무를 심의·처리하는 등 3개의 행정지원위원회(간행물편찬, 정보화, 의원공무국외연수심사)가 있다.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의 생산성, 효율성, 합리성을 지원하는 진정한 숨은 일꾼으로 의회 내 의회자료실은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교양함양을 위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3만여권의 도서와 각종 시청각 자료들을 비치하고 있다. 또한 의정전문열람실은 의원들이 도정분야별 전문지식을 연찬할 수 있도록 정부간행물과 전문서적을 집중 비치한 의정전문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실과 시청각실이 있다.

의회로비 앞에 마련된 의회사료관에는 1956년 개원된 초대의회부터 제5대 의회까지 총 200여점의 기록문건과 사진·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어 의회를 방문하는 도민들로 하여금 경기도의회의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4. 경기도 역사기록의 산실 기록담당실

제2대 의회 해산 후 중단되었던 경기도의 역사기록이 제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속기사 3명이 다시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1991년 7월 8일부터 재개된 역사기록은 2004년의 끝자락인 지금 19명의 최정예 속기사가 ‘과거는 미래의 거울, 역사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오류 없는 기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3대 의회, 수기속기사 3명으로 시작된 기록업무는 19명의 속기사가 전부 컴퓨터속기(CAS)자격증을 취득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기속기에서 컴퓨터속기로의 방향전환이 쉽지는 않았으나 어느 의회보다 발빠르게 시대조류에 따르고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중 최고의 의회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기록파트가 되겠다는 욕심으로 1996년 업무와 속기교육을 병행, 1997년부터 컴퓨터속기를 회의록 작성에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기록문화를 만들어 오고 있다.

5. 회의록 전산시스템의 체계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에 걸친 회의록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은 경기도의회 기록계가 자랑하고 싶은 최대의 성과이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의회 해산 후 재개된 제3대 의회부터 현 제6대 의회까지의 전 회의록을 전산화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운영체제와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하나의 키워드로 방대한 회의록을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검색기능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대집행부질문 시 질문과 답변을 연결하여 도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답변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은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의 백미라 할 수 있겠다.

이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경기도의회 속기사들은 자체 워드작업(3·4대 회의록)을 통해 약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현재 연간 수만 명의 경기도민이 회의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각종 회의 자료를 발췌하고 있는 등 도민에게 의회의 활동모습을 한 발짝 더 가까이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6. 늘 자기 계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기도의회 속기사들

각종 회의에서 부족함이 없는 속기를 위해 경기도의회 속기사들은 자기 계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비회기를 이용한 각종 언어연수 및 교육을 통한 자기 계발은 물론, 분기별 모임을 통한 한글맞춤법 바로 알기 회의를 통해 보다 발전된 경기도의회 회의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처럼 규모가 방대하지는 않지만 체계적이면서 한편 자율적인 운영시스템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변화해 가면서 더욱 발전하리라 다짐해 본다.

속기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동남아시아 언어 외래어 표기법 제정 고시 (문화관광부 2004.12.29)

홍 보 부

-“푸케트”는 “푸켓”, “칼라룸푸르”는 “쿠알라룸푸르”, “호치민”은 “호찌민”으로

문화관광부는 12월 20일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타이어, 베트남어 등 동남아시아 3개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을 고시하였다. 1986년에 제정된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는 동남아시아 언어들에 대해 자세한 표기 규칙이 없어 외래어 표기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표기하였으나 현지 발음과 지나치게 동떨어지게 되어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최근 지진해일로 피해가 컸던 Phuket도 “푸케트”로 적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일반에서는 “푸켓” 또는 “푸켓”으로 적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새 표기법에서는 현지 발음에 가깝게 “푸켓”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현지 언어의 발음에 가깝게 표기

-타이어와 베트남어에 된소리(ㄱ, ㄷ, ㅃ, ㅆ, ㅉ) 표기를 도입

동남아시아 언어 외래어 표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된소리 표기(ㄱ, ㄷ, ㅃ)를 허용한 것이다. 그동안 “ㅆ, ㅉ” 등은 일본어와 중국어 표기에 사용하여 왔으나 “ㄱ, ㄷ, ㅃ”은 외래어 표기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새 표기법을 제정하면서 우리말처럼 g(ㄱ):k(ㄱ):kh(ㅋ) 소리가 구분되는 타이어와 베트남어에 대해서는 된소리를 쓰도록 하였다. 다만 말레이

인도네시아어처럼 g(ㄱ):k(ㅋ) 두 가지 구분만 존재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그 밖에도 새 표기법은 단어 중간의 ng를 “응”으로 적고(Nguyen 구엔 응우엔), 음절말 파열음은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도록(Lombok 롬보크 롬복) 하였다. 베트남어의 tr을 “쯔”으로, nh를 “니”로 적으며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e는 “에”와 “으”로 나누어 적도록 하는 등 개별 언어의 특성을 대폭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나트랑”은 “냐짱”으로 “세메루”는 “스메루”로 현지 발음에 보다 가깝게 표기하게 되었다.

-새 표기법에 따른 「외래어 표기 용례집」 발간

국립국어원은 동남아시아 외래어 표기법 제정에 맞추어 「동남아시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발간하였다.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었지만 고유 문자가 따로 있고 특수 부호가 많은 동남아시아 언어들에 대해 직접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여 표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이들 언어권의 주요 용례 1,500여 항목에 대해서 원어와 표준 한글 표기를 수록한 용례집을 발간하였다.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새 표기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용례집의 발간으로 혼란스러웠던 동남아시아 언어의 외래어 표기가 일관성을 지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http://www.mct.go.kr/korea/office/notify/notify_view.jsp?menu=121&viewFlag=read&oid=@51839|4|1

회의 상황의 유의미한 다큐멘테이션을 위해서...

- 유시민 위원 : 규개위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 감사원재정·금융감사국장 하복동 : 그렇습니다.
- 유시민 위원 : 심의를 해서 1년 넘게 이것도 딜레이시켰는데 규개위에서 이 문제를 심의한 회의록이 다 있습니까?
- 감사원재정·금융감사국장 하복동 :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 유시민 위원 : 회의록을 확인하셨습니까?
- 감사원재정·금융감사국장 하복동 : 예, 확인했습니다.
- 유시민 위원 : 그 규개위 안에서 이 문제에 관한 좀 심각한 논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 (중 략)
- 감사원재정·금융감사국장 하복동 : 구체적인 회의내용은……
- 감사원장 전윤철 : 그 회의록에는 반대와 찬성의 의견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 유시민 위원 : 그러면 회의록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 감사원재정·금융감사국장 하복동 : 결론만 나와 있습니다.
- 유시민 위원 : 그러면 회의록이 없는 것이지요, 규개위는. 회의의 결정 사항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규개위 회의내용은 회의록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감사원장 전윤철 : 그게 회의록입니다, 결정된 사항.
- 유시민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감사할 방법도 없는 것이지요, 결정된 사항만 나와 있다면.
- 감사원장 전윤철 :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 유시민 위원 : 그러면 결국은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반씩 섞어 놓고 어떤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로 책임이 무거운 쪽은 정부위

원들인데……

○**감사원장 전문철** :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일이 소수의견 같은 것을 다 기재를 하게 되면 회의체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제24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중에서>

먼저 제시한 예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은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 된다. 이처럼 “회의록”은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통일되지 않은 피상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의 차이가 일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회의는 여러 사람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견을 좁혀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적 절차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민주화될수록 회의체가 증가하고 또 그 회의의 결과가 조직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근래 들어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비판을 살 정도로 정부 산하기구로 혹은 자문기구로 다양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는 대표적인 회의체 기구라고 할 수 있다. 회의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은 회의록이다. 그런데 지금은 공개의 기피 수단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요약을 빌미로 의사결정 과정은 모두 생략한 채 결과만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회의록은 왜 생산하는가? 회의에 수반되는 기타 기록을 제외하고 굳이 회의록을 생산하는 이유는 의사결정 과정을 다큐멘테이션하고자 하는 것이다. 회의록 생산의 목적을 고의로 기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달리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의록을 찾는 사람들의 기대는 전체적인 회의 진행과 참석자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함일 것이다. 이런 이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회의록의 작성) 2항에는 “회의록에는 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발언요지”의 해석이다. 시행령에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발언요지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에 그 요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는 내용을 덧붙임으로써 “발언요지”의 해석 논란의 한계를 드러내고 회의록의 종류에 따라 다큐멘테이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시행령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의를 제외한 다른 회의의 회의록에서는 이용자들이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내용을 볼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굳이 회의록 작성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과정을 제외한다면 회의와 관련된 기타 기록들은 ‘회의진행철’ 등으로 편철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회의록 생산은 무의미할 것이다.

1952년 제정된 ?헌법위원회법시행령?에서는 회의록 게재사항에 “각 위원의 토의요지”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회의록의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노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회의록 작성 의무의 부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국가기록원장이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에 그 요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지정한 회의가 12개인데 확인된 10개의 회의 중 속기록을 작성하는 회의는 하나도 없었고 요지만 작성하는 회의가 6개, 녹음기록에 요지를 첨부하는 회의가 2개,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회의가 2개(강길부 의원 2004년도 국감요구자료 중에서)로 법령을 준수하는 곳은 단 2곳으로 나타났다.

앞의 제시한 예에서 보듯이 회의록 작성 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참석자들의 발언이 위축되어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들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의 필요상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생산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요구를 피해 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비공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지만 회의의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정책 입안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강력한 집행력을 행사할 때도 많은데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근거로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고려해 볼 일이다.

이라크현지 진상조사 수행을 다녀와서

(이라크내테러집단에의한한국인피살사건진상조사관련)

- 진정 평화를 유지시키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배 영 수

2004년 7월 16일, 인천에서 방콕을 거쳐 암만에 도착하던 15시간 내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국회 속기과에 입사한 후 난생 처음 떠나는 해외 출장의 도착지가 준전시 상태인 바그다드였기 때문이었다.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주었던 고 김선일 씨 사건 현장조사를 위해 5명의 조사위원 그리고 1명의 수행직원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총 1주일 간의 조사기간 동안 온전하게 기록을 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지만, 더 큰 부담은 안전에 대한 것이었다. 현지에서의 모든 일정이 보안 관계로 변경되는 바람에 암만에서 바로 바그다드로 들어갔다(바로 전 일정은 암만에 도착한 이틀 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저항세력 때문에 육로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부득이 항공기를 이용(하루 2편만 운행하며, 약 100인승 정도의 소형)하여 바그다드로 들어가는데, 언제 저항세력의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은 터라 바그다드로 향하는 1시간 여 동안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길고 지루한 사막을 날아 바그다드에 도착했을 때 숨이 턱 막힌 것은 50도에 육박하는 건조한 기온 때문만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으로 붐벼야 할 공항은 쓸렁한 편이었고, 대신 무장을 한 연합군과 우리 조사반을 경호하기 위한 무장경호팀으로 살벌한 분위기까지 감돌았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콘보이 차량에 싸여 우리 대사관에 도착하니 대사관 건물

(임시로 개인 주택을 임차해서 쓰고 있었다)안에 귀신도 잡는다는 9명의 우리 해병대원이 있는 게 아닌가!(대사관 외곽은 이라크 무장경찰, 출입문 주변은 민간 무장경호원, 건물 안은 우리 무장해병대원, 이렇게 3중 경호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안도의 숨을 내뿜기도 전에 바로 회의를 시작할 줄이야!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회의실에 가보니 상황이 상황인지라 매우 열악한 회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마이크 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았고, 회의 참고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2-3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정전이 되어 가지고 그나마 있던 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 바람에 육성을 알아듣는 데 엄청난 불편을 겪었던 점이였다.

2박 3일 동안 이라크대사관에 머물면서 기록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낀 점도 적지 않았다. 어려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는 대사관 직원들과 진지함과 열의로 조사에 임하는 조사위원,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여러 안내와 서비스를 해 준 대사관 내 현지 직원들을 대하면서는 긴 여정의 피곤함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매일 밤 잠결에 아련하게 들려오던 포성은 꿈속에서 들었던 것일까? 아침마다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 머리가 멍한 것보다(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좀 설치는 편) 더 답답했던 것은 24시간 내내 건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게다가 욕실을 쓸 때는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였다.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특성은 가족욕실의 전통이 남아 있어 욕실에 아빠변기, 엄마변기, 아이변기, 그리고 세면대가 나란히 있는 관계로 세 사람이 한꺼번에 볼 일이 생겼을 때 한 사람만 제대로 일을 볼 수밖에 없으니 그저 꾸~욱 참을 수밖에.....

어쨌든 이라크대사관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바그다드공항으로 왔을 때 기어코 비상사태가 터지고야 말았다. 우리 팀이 타기로 했던 오후 비행기가 떠나버렸다는 것이다. 오전 비행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오후 비행기가 일찍 출발해 버린 것이다. 망연자실할 틈도 없이 공항 측과 실랑이 끝이 가까스로 국제적십자사 비행기(소형 20인승, 구호활동 차 왔다가 다시 암

만으로 나가는 비행기, 다행히 조종사와 부조종사 2인밖에 없었다)를 간신히 얻어 타고서야 암만으로 나올 수 있었다.

암만은 바그다드와 가까운 도시지만 비교적 안전한 도시였다. 실제로 이라크전쟁 때 이라크인들이 가장 많이 피신해 온 나라가 요르단이기도 하다. 암만에 있는 요르단대사관에서 4개의 우리 공관(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요르단대사관 역시 회의장 기록 조건은 바그다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정전은 없었지만). 어느 누구하고도 업무교대를 하지 못한 채 회의 끝날 때까지 혼자서만 기록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갈증이 나도 물 마시는 것을 자제해야 했던 상황도 힘들었지만 더욱 힘들었던 것은 몇 시간씩 쉬 없이 기록을 하다 보니 실제로 손가락 마디마디에 경련이 일어났고 팔이 저려오기도 한 점이였다. 그러다 보니 조사위원들이 “속기사, 괜찮아요?”라고 자주 물어 왔고, 속기사를 잠시 쉬게(?)하기 위해 짧게 정회를 하기도 했다. 평소에 느껴왔던 점이지만 속기업무로 출장을 나갈 때는 최소한 교대할 수 있는 인원으로 2인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다.

어찌 됐든, 공식적인 조사 일정은 암만에서 무사히 끝이 났고,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우리 팀은 로마로 향했다.

중동을 벗어나 로마로 향하면서 긴장이 풀린 탓인지, 피로가 몰려온 탓인지 비행기 안에서 내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이번 출장을 계기로 가본 중동지역은 비록 이라크와 요르단에 불과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김선일 씨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라크의 일반 시민들은 저항세력의 무자비한 납치·살해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그들로 인해 자신들의 이미지가 과격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물론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에 외국 군대가 와 있는 상황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항세력의

반인륜적인 과격한 행동은 이라크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과 함께 이라크 해방이라는 명분 아래 절제 없는 군사력을 사용한 미국 또한 자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로마에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착잡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힘에 의한 질서(그것이 독재든, 군사력이든)는 모래 위에 짓는 성 같다고나 할까, 마치 언제든지 무너뜨릴(혹은 무너질) 준비가 돼 있다는 듯 우리를 긴장시키기 때문이다. 속기사로서 새로운 경험을 했지만 이런 불행한 일로 출장 가는 일이 더 이상은 없기를 바라며, 고 김선일 씨의 명복을 다시금 비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 출장에 보여준 직장 동료들의 염려와 여러 가지로 도와준 수고에 대해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국회사무처 속기2과3담당)

속기는 영원한 내 친구

박 세 호

무심코 씻는 손이지만 가끔 손가락 마디의 굳은살을 볼 때마다 내가 속기 사였음을 느낀다. 속기라는 단어처럼 나를 가슴 뜨겁게 달구고, 나를 얼어붙게 했던 말이 있었던가.....

단순한 자격증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부대끼며 단순한 직업으로서의 속기가 아닌 남다른 의미로서의 속기를 만났었다.

척박한 기록문화의 기반에서 취약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여건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러 속기인들을 힘들게도 했고, 지치게도 했지만 쉽사리 내가 펜을 놓지 못했던 까닭은 흔히들 농담처럼 얘기하는 “배운 도둑질이 이것 밖에 없다” 어설픈 이유.....

집을 떠나 타향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언제라도 때가 되면 돌아갈 고향이 있듯이 그런 고향과 같은 - 거창하게 기록문화의 창달같은 건 아닐지라도 ‘속기’란 것은 내게 친직같이 느껴진다. 한때나마 속기를 업으로 삼고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개인 사정으로 다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맘속에도 분명 나와 같은 애뜻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나만의 몽상은 아닐 것이다.

미안하고..... 죄송하다.....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나마 같이 있는 사람들조차 개인적인 생활에 더 신경을 쏟는 것을 누가 탓하랴마는 내 자신이 그런 사람 중의 하나가 되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 속기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도 많았는데..... 밤새 뜯 눈으로 속기발전을 위한 계획서를 만들며 고민하던 때가 엇그제 일인데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다. 내가

사랑하는 지방의회 가족들과 힘겹게 살림을 꾸려가는 여러 분들한테 막내로서 죄송스럽다. 속기계가 탄탄대로 위에 서있는 단계라면 외도하는 나의 마음도 편하련만.....

변화!

자주 쓰는 말이지만 요즘은 피부로 느낄 만큼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 기득권이 되거나 변화에 대해 무더질 때쯤 되면 그와 같은 ‘변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게 사람이 아닐까 싶다. 초기의 수필속기도 그랬고, 중간에 나온 기계속기도 그랬고, 지금의 컴퓨터 속기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거부 속에서도 속기는 조금씩 그 발전의 물결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컴퓨터속기 다음의 다른 속기방법이 또 우리 속기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변화가 솔직히 두렵다.

변화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때문에 더 두렵다. 속기는 나 개인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속기를 모르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속기를 공부하고 속기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만이 아는 속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록이라는 의미 자체를 특권화시켜서 특정인들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그렇게 키워지는 속기는 살아있는 기록을 위한 속기가 아니라고 본다.

역사는 각기 현 시대의 기록들을 연결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기인들이 현 시대의 생각에 맞추지 못한다면 그 기록은 누구를 위한 기록인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못내 아쉽지만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다 준 것이 속기이기에 아직 나는 속기에게 빛을 지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내가 쌓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토대가 되어 빠른 시일 내에 그 빛을 조금이나마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오산시의회)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 정 민

나는 가끔씩 ‘만약 내가 속기를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속기’는 그야말로 나에게 좌절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도 했고 또 기쁨과 희망을 주기도 했던 내 인생의 동반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속기’란 것이 내게 준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인내였던 것 같다.

법률학 공부에 별 흥미가 없었던 나는 재미있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찾고 싶었다. 선생님과 부모님의 뜻에 의해 살아 온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 무엇인가 책임 있게 선택을 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컴퓨터속기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 이것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속기공부를 시작했을 당시 처음에는 스피드에 매력을 느꼈지만 차츰차츰 나도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일의 한 몫을 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와 함께 국회속기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마음속 깊이 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속기사자격증이 필요했다. 그래서 더욱 더 속기연습에 매진하였고 마침내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물론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번의 고배는 기본으로 마셨다.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처음 입사한 곳은 의정부법원이었다. 안동에서만 죽 살다가 처음으로 타지 생활을 해야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리고 아주 멋지게 내 일을 해내리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날 기다리고 있는 법원의 현실은 평소에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계약직이라는 딱지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고 내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져 ‘이건 아니야, 다시 시작하자’라는 생각이 머리속에서 떠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3년에 국회속기직 시험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국회속기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래, 열심히 하면 나도 될 수 있어, 한번 해 보는거야!’라는 생각으로 시험공부를 하였지만 그해 시험결과는 낙방이었다. 그때 내 자신에게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리고 몇 달 뒤에 포천시의회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의회는 법원보다 안정적이고 훨씬 여유가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었다.

2004년 시험공고가 난 후,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속도연습과 함께 도서관을 다니면서 천천히 시험준비를 해나갔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지만 모두 다 뒤로 미루고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1차시험 결과는 합격이었다. 아, 내게도 행운이 찾아오는건가…… 너무도 기뻐지만 2차시험을 바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질 시간이 없었다. 포천 근처에는 마땅한 속기학원이 없어서 어떻게 2차시험 준비를 해야 될지 참으로 막막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함께 일하고 있던 포천시의회 유영석 선배님과 강부자 선배님이 실기시험 연습을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퇴근 후 직접 준비한 연설문, 논설문을 낭독해 주었다. 그분들의 개인시간을 빼앗는 것이라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미안하면 꼭 합격하라는 말씀에 힘을 얻어 밤늦도록 연습을 했다. 아마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글을 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2004년 8월 30일 국회에 입사하게 되었고 정신없이 정기국회를 치러야 했다. 입사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돌아보면 새내기로서 의욕만 넘쳤지 온통 실수투성이였던 것 같다. 앞으로 더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10년, 20년 후의 내 모습을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훗날의 멋진 내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결국은 나의 몫이니까……

(국회사무처 속기2과3담당)

나는 ‘아직’ 부족한 나무

권 초 롱

“사람 사는 데 ‘끝’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걸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쓸데없고 망망한 질문 같겠지만 대한민국 국회 신참 속기사로서의 제 느낌을 단적으로 표현한 물음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

...저는 국회속기사가 되면 늘 내 머리 한쪽을 쪼고 있던 딱따구리를 날려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원이 아닌 것도 아닌, 쉽게 말해 비주류가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긋지긋한 소외감에서 벗어나겠구나, 많은 속기인과 일하게 되면 「속기사 = 타이피스트」라는 오해로 단단해진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한 일이 100% 남의 공(功)으로 포장되는 억울함은 안 겪겠구나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닌 ‘산 넘어 산’의 연속. 그러고 보면 제가 속기를 시작한 후로는 늘 그랬던 것 같네요.

...제가 속기에 첫발을 내딛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6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슨 모험이나 시작하듯 크게 숨을 고르고 속기학원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리고 들어갔던 1999년. 그 해는 전국민이 ‘IMF’라는 경제용어의 의미를 처절하게 체득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선생의 길을 포기하고도 ‘배운 것이 도둑질 뿐’이라 초등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강사를 하고 있던 이 사람 또한 인생 쓴 맛을 처량하게 보고 있던 때였지요.

...보따리장수처럼 이곳저곳 다니며 강사 하는 것에 지친 저는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기간제 교사를 하다가 정교사로 흡수되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이 있는, 한때 선생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졸업 이후

한동안 제 전공의 교원임용고시는 없었고 경기도 좋지 않아 이래저래 오랜 꿈을 접어야만 했더랬습니다. 그 와중에 언니의 권유로 속기를 배우게 되었는데 취업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고 설령 취업을 해도 2, 30년 근속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이다 명예퇴직이다 해서 파리 목숨이 되는 판에 아주 솔깃할 만한 직업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린 로드맵은 이랬습니다. ‘그까짓 것 한 9개월만 죽어라 하면 자격증 따고, 취업하는 데 한 3개월, 1년이면 안정된 직장 잡겠구나. 공무원 사회도 구조조정 있다지만 정 안 되면 속기사무실을 차려도 되지. 일단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거군!’ 되돌아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참 어설 프고 어이없는 계획이었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9월이 시험인데 정작 9월이 되었을 때엔 3급도 안 되는 실력이었고 다음 시험은 해를 넘어 2000년 7월에나 있었으니……. 결국 속기를 배운 지 1년 하고도 네 달이 더 지나서야 1급 자격증을 땀지 땀니까. 속기로 취업하는 데 1년을 예상했는데 자격증 따는 데만 1년이 훌쩍 넘어버렸으니 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자격증만 취득하면 끝일 거라는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제가 속기를 배우기 시작한 즈음에 컴퓨터속기 붐이 일었던 모양입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속기를 시작해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군요. 경제학 교재에서 글자로만 보던 ‘공급과잉’ 속에 제가 있었던 거죠. 큰 기대로 시작해서 딱 속기자격증이 부도수표가 되어 버렸지만 속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원비며 투자한 시간이며 쏟아 부은 노력…… 그러나 이런 매몰비용보다는 속기가 어느새 제 인생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속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더 큰 이유였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자마자 변호사사무실마다 우편물과 녹취 광고지를 돌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해서 마땅한 취업 공고가 없으면 속기사무실을 낼 심산이었거든요. 한 사흘쯤 지나니 어느 속기사무실로부터 “혼자서 녹취를 맡을 것이 아니라 회의 속기를 고정으로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회의와 녹취 일을 2001년 4월 법원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 했는데 국내 우수 기업들의 회의를 많이 맡고 있는 사무소

였고 프로 근성으로 뚝뚝 뭉치신 분들이었던 터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초동과 달리 프리랜서 대우가 박하지도 않아 ‘이제 한숨 놓겠다’ 싶었지요.

...2003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코 낮지 않은 경쟁률로 실기시험까지 치르고 법원속기사가 되어 ‘이제는 길고 지루한 취업전쟁에서 해방이다’라는 기쁨도 잠시 자꾸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을 부렸던 저는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속기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국회 연수국 건물 옆 커다란 느티나무 아시나요? 그 나무를 보게 되면 가슴에 철렁하고 쇠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2년을 기다린 끝에 2003년 국회시험 답안지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빠져나와 그 느티나무 앞에 철퍼덕 주저앉았던 기억 때문입니다. 사표까지 내고 준비한 시험인데 떨어지다니! 입수한 2001년 시험경향 정보와 어찌 이리 다를 수 있을까! 하늘도, 땅도, 세상 모든 것이 죄다 노래졌습니다. ^^ 그러나 이젠 괜찮습니다. 2004년, 이런 이야기를 옛이야기처럼 속삭이며 그 나무 앞을 산책하게 되었으니까요.

...국회 시험에 합격하고는 어리석은 저 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진짜진짜 고생 끝이다!’ 그런데 웬걸요. 사람에게 길들여질 필요 없이 나 혼자 일만 하면 되었던 지난날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함께 작업하고 함께 해결하고 또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배울 것은 끝이 없고 ‘속기사는 타이피스트보다 향상된 속도로 기계처럼 문서를 뽑아내는 사람’이라는 몰이해 또한 엄존해 있습니다. 국회 속기사들은 어느 한 사람의 필요에만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의 내용을 채우는 국회의원, 회의의 내용을 정보로 사용할 사회 각계각층의 정보요구자, 국회회의록이 갖는 사료(史料)로서의 고결한 가치 이 모두에 충실하려고 애를 씁니다. 무미건조한 문자의 조합인 회의록에 현장의 생동감을 불어넣으면서도 국어학적 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구하고자 매순간 고뇌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뇌와는 상관없이 ‘속기사, 순 가짜네’라고 몰아붙이는 낮은 이해와 여전히 맞닥뜨립니다. ‘속기사, 순 가짜네’라고 말한 분은 속기를 무슨 음성인식기 정도의 기계적 기능만 가지면 수행되는 단순한 업무로 알아먹은 모양이지요.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요, 제가 짧지 않은 6년 동안 일관되게 속기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론 이제 겨우 속기를 안 지 6년밖에 안 된 초보라는 사실입니다. 업무 수행 과정의 모든 단계 중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나 혼자 할 능력도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아직은’이라는 관용으로 이끌어주고 배움을 줄 선배가 너희 곁에 있어 주겠다는 약속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선배?동기들과 함께’라는 소외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고 내뱉는 여러 공격에 결코 지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속기사랑’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도종환님의 ‘가족나무’ 시구(詩句)처럼 저는 제가 부족한 나무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가지는 구부러졌고 어떤 줄기는 비비 꼬여있다는 걸 압니다. 속기계에 계시는 여러 훌륭한 선배님처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열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쓰러지기도 하는 ‘아직’은 미숙한 나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열심히 뿌리내리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폭염에도 흐려지지 않는 길은 그늘을 가진 믿음직한 선배가 될 수 있겠지요? 흙을 움켜쥐고 굳건히 속기계와 뻗어 가는 성실한 후배가 될 수 있겠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속기사가 되어야 할지를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쯤이면 됐다’에 안주하려는 나태를 경계하겠습니다. 안테나를 끈게 세우고 지금의 제 마음 잃지 않는 늘 생동하는 속기사가 되고 싶습니다.

회 원 동 정

♣ 감사합니다.

- 김점동 이사님, 문선희 회원님(국회사무처)께서 발전기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 승진/임용/전보/파견/수상 · 축하합니다.

- 조대성 회원(행정자치부) : 사무관으로 승진(2004. 2)
- 임희용 회원(국회사무처) : 국회의장상(2004. 5)
- 엄의숙, 황은화 회원(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총장상(2004. 5)
- 이현숙 회원(용인시의회) : 기초의회 최초 6급 승진(2004. 7)
- 이경진, 조윤희, 최영림 회원(국회사무처) : 속기서기로 승진(2004. 7)
- 권초룡, 이정윤, 홍명진, 최혜연, 최정민, 신기숙 회원(국회사무처) : 속기서기보시보로 임용(2004. 8)
- 신기숙 회원(경기도의회) : 재임용(2004. 11)
- 박정호 회원(국회사무처)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 보임(2005. 1)
- 고석광 회원(국회사무처) : 국회의장상(2005. 1)
- 백순정, 이경숙 회원(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총장상(2005. 1)

♣ 교육/연수 · 수고하셨습니다.

- 홍순관 이사장(국회사무처) :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2004. 1)

♣ 복귀 · 반갑습니다.

- 홍순관 이사장(국회사무처) :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전문위원(2005. 1)

- 송동우 회원(국회사무처) : (2004. 9)
- 이경숙 회원(국회사무처) : (2004. 11)
- 제신지 회원(국회사무처) : (2005. 1)

♣퇴직/휴직 · 수고하셨습니다.

- 차공순 회원(국회사무처) : 명예퇴직(2004. 2)
- 송동우 회원(국회사무처) : 육아휴직(2004. 6)
- 신기숙 회원(국회사무처) : 퇴직(2004. 11)

♣결혼 · 축하합니다.

- 김종명 회원(경상북도의회) : 2004. 10. 31

♣개업/개소 · 발전을 기원합니다.

- 윤태원 회원(윤컴시스템) : 대전기술연구소 개소(2004. 5)
- 윤태원 회원(윤컴시스템) : 음식점 개업(2004. 12)

♣전시회 · 축하합니다.

- 배진영 회원(대구 달성군의회) : 미술 개인전 개최(2004. 4)

협 회 동 정

♣이사회 소식

· 제195차 이사회(2004. 1. 27)

- ▲ 제37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 2003년도 결산서에 관한 건
-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 등을 심의.

· 제196차 이사회(2004. 4. 16)

- ▲ 2004년도 사업집행에 관한 건 등을 심의.

· 제197차 이사회(2004. 7. 2)

보고사항으로는

- ▲ 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 워크숍(6. 19 ~ 6. 20)
- ▲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 등이 있었음.

이어서 부의안건으로는

- ▲ 2004년도 사업집행에 관한 건 등을 심의하였음.

· 제198차 이사회(2005. 1. 19)

보고사항으로는

- ▲ 주소록 발간 완료(총회 시 배부 예정)
- ▲ 2004년도 결산 감사(1. 19)가 있었음.

이어서

- ▲ 제38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일시 및 장소 결정)

- ▲ 2004년도 결산서에 관한 건
-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 등을 심의하였음.

• 제37회 정기총회

2004년 2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됨.

2003년도 결산승인의 건,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됨. 이어서 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국제이사에 조영기 회원을, 평이사에 김창진 회원을 선임함.

• 제12회 속기학술세미나

2004년 8월 27일~28일 양일에 걸쳐 충청남도 태안의 오션캐슬리조트에서 총 20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주제발표로는

- ▲ 의회와 법원의 기능과 역할(이병길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 ▲ 속기사법 제정에 대한 검토(강신일 경기대 겸임교수)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었음.

• 제12회 속기경기대회

2004년 9월 4일 국회사무처 전산교육장에서 개최됨.

속기경기대회 결과는

- ▲ 금상에 권초롱 회원(국회사무처)
- ▲ 은상에 이정윤 회원(국회사무처)
- ▲ 동상에 김현진 회원(국회사무처)이 수상함.

< 속 기 요 금 표 >

속 기 기 본 료	1 시 간 당	300,000원
녹 음 재 생	1 시 간 당	350,000원
전 문 분 야	1 시 간 당	350,000원
외 국 어 속 기	1 시 간 당	400,000원
요 점 속 기	1 시 간 당	200,000원

-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총속기요금의 4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 후 번문에 착수한다.
- 지방 출장시에는 상기 요금외에 일체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
- 요지작성료는 상기 요금외에 매시간당 50,000원씩 가산한다.
- 이 요금표의 적용은 1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 ※협회의 직인이 없는 요금표는 무효임.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대 한 속 기 협 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 (국회사무처 속기과내)

전화 : 788-2371 ~ 7